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정책과제

일시 | 2019. 7. 26(금) 14:30~17:00

장소 |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다이나믹홀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정책과제

- 일시: 2019년 7월 26일(금) 14:30~17:00
- 장소: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다이나믹홀
-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시간	일정
14:30~14:40	등록
14:40~14:50	사회: 황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개회] 개회사: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4:50~15:40	[주제발표 1]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과 평가 -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제발표 2]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강화 - 포용국가 아동정책 -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
15:40~15:55	휴식
15:55~16:40	좌장: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참여연구실장) [토론] 김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김도현 (국제아동인권센터/CHILDVOICE, 고등학교 1학년)
16:40~17:00	종합토론
17:00	폐회

목 차

○ 주제발표 1	1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과 평가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제발표 2	31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강화 - 포용국가 아동정책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	
○ 토 론	73
김 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_	75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_	82
김도현 (국제아동인권센터/CHILDVOICE, 고등학교 1학년)_	86
○ 부 록	91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주제발표 1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과 평가

유 민 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정책과제』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과 평가

유 민 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9.07.26.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다이나믹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과 평가 TABLE OF CONTENTS

01.

배경

02.

아동·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측정

03.

연구 방법

04.

주요 결과

05.

논의 및 결론



01. 배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배경

- 이 발표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수준을 알아보고,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있음.
-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수준은 UNCRC의 권리 클러스터 별 설문 결과를 토대로 도출
- 이 발표의 내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8년에 발간된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며, 종합 평가 파트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을 정리한 것임¹⁾

1) 이 연구의 자세한 내용은 “최창욱, 황세영, 유민상, 김진호, 이민희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고

02. 아동·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측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측정

- 아동·청소년의 인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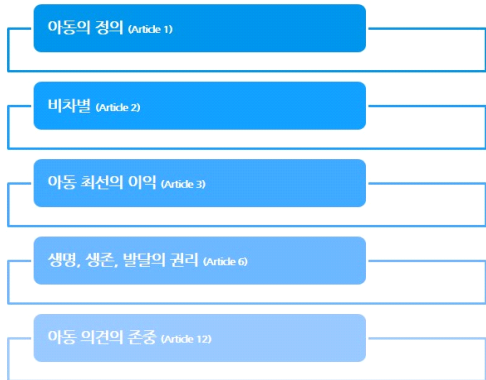
A. 아동·청소년은 누구인가?

B. 아동·청소년이 가진 권리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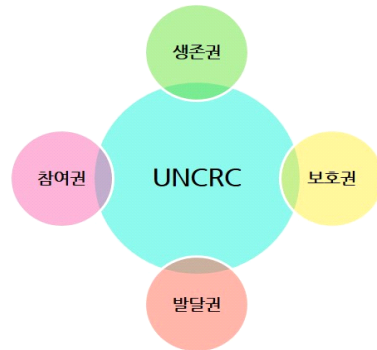
C. 아동·청소년이 가진 권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의 개념들로 UNCRC의 권리 영역 및 주요 원칙을 적용
- UNCRC 국가보고서 작성 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 국가보고서 작성틀 활용 중

UNCRC의 주요 이행 원칙과 권리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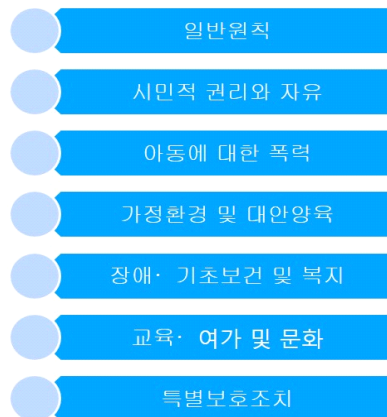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주요 권리>

UNCRC의 권리 클러스터

국가보고서 작성 원칙의 주요 권리 클러스터



아동·청소년 인권 측정 프레임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 조직
		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1-1-2. 인권에 대한 인식	1-1-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1-1-2-3. 인권의식 및 태도*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1-3. 인권교육	1-1-3-1. 인권교육 실시 현황
		1-1-3-2. 인권교육 경험(횟수, 장소, 도움정도)*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해 본 경험*
		1-2-1-2. 차별받은 경험*
	1-2-2. 아동이의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1-2-2-1.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 측정 프레임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
		2-1-1-2.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1. 학급회의 활성화 정도(운영 여부, 의견제시 정도)*
		2-1-2-2.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1. 아동·청소년정책. 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1-1.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2-2-1-2.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3-1. 결사. 집회 경험률	2-3-1-1. 결사. 집회 경험률(경험여부, 피해경험)*
		2-3-1-2. 결사. 집회 경험률(경험여부, 피해경험)*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경험률	2-4-1-1. 용모. 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
		2-4-1-2. 학교에서 개인정보 공개정도(교육비 미납, 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
2-5. 정보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2-5-1-2. 유해매체 이용률
	2-5-2. 정보제공 정도	2-5-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2-5-2-2.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 측정 프레임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3. 폭력 및 학대

증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가, 제28조 2항)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3-1-1-1. 폭력피해 경험*
		3-1-1-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3-1-2. 체벌 경험률	3-1-2-1. 체벌 경험률*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지(제19조, 제39조)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2-1-1. 아동학대 사례건수
		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3-2-1-3. 방임 정도*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2-2-1.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
		3-2-2-2.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업무량
		3-2-2-3. 서비스 제공정도 및 조치결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 측정 프레임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증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4-1-2. 보호, 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4-1-2-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제20조)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4-2-1-2. 입양 사후조치(입양성공률/파양률)
	4-2-2. 대안양육 비율	4-2-2-1. 요보호아동 현황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4-2-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출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4-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4-3-1. 양육, 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2-3-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기관 및 만족도*
		4-3-1-1. 양육, 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4-3-1-2. 보호 양육시설 예산
		4-3-1-3.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 측정 프레임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①

증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5-1-1-2. 장애아동, 청소년 통합교육비율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2-1. 사망률	5-2-1-1.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5-2-1-2. 영아, 아동, 청소년 사망률
		5-2-1-3. 사고 사망률
5-3. 보건서비스 (제24조)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2-1. 범죄 피해율
		5-2-2-2. 지역사회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5-3-1-1.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5-3-1-2. 보건교사 배치 현황
		5-3-1-3.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2-1.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5-3-3-1. 흡연율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2. 음주율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 측정 프레임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②

증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5-4-1-1. 주관적 건강평가*
		5-4-2-1. 운동 실천율*
5-4. 신체적, 정신적건강 증진 (제24조)	5-4-2. 신체적 건강	5-4-2-2.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이유*
		5-4-2-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5-4-2-4. 비만율
	5-4-3. 정신적 건강	5-4-3-1.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5-4-3-2. 우울증*
		5-4-3-3. 스트레스 인지율*
		5-4-3-4.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5-4-3-5. 삶의 만족도*
		5-4-3-6. 자아존중감*
		5-4-3-7. 고민거리대화상대*
5-5.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제26조 및 제18조 3항)	5-5-1. 아동, 청소년복지 예산 국가간 비교	5-5-1-1. 아동, 청소년 빈곤율, 빈곤율 국제비교
		5-5-1-2. 아동, 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5-5-2.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 측정 프레임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학생 취학률
		6-1-1-2. 학생 진학률
		6-1-1-3.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6-1-1-4. 교원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6-2. 교육의 목표 (제29조)	6-2-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6-1-2-1. 학업중단율
		6-1-2-2.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6-1-2-3.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6-2-1-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6-3. 여가, 놀이 및 문화, 예술 활동 (제31조)	6-2-2.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6-2-2-1. 대안교육 참여 기회
		6-2-2-2. 직업교육 참여 기회
	6-3-1. 여가, 문화, 예술 활동기반 시설수	6-3-1-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6-3-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6-3-2. 여가, 문화, 예술활동참여율	6-3-2-1. 여가, 문화, 예술활동 참여도
		6-3-2-2. 아동, 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6-3-2-3. 동아리활동 참가율*
		6-3-2-4.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6-3-2-5. 하루평균학습시간*
		6-3-3-1.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6-3-3. 여가, 문화, 예술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6-3-3-2.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 학교지지 정도*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 측정 프레임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7. 특별보호조치 ①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7-1.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7-1-1-1. 아동, 청소년 난민 비율
		7-1-1-2. 탈북 난민 아동수
		7-1-1-3.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7-1-2.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7-1-2-1.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7-2. 소년사범아동	7-1-3. 이주배경아동,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7-1-2-2.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중도탈락률
		7-1-3-1.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7-2-1. 자유박탈 아동, 청소년 수용률	7-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서비스
		7-2-1-1.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7-2-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7-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7-2-2-1.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7-2-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	7-2-2-2.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3년주기)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7-2-3-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7-2-3-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 측정 프레임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7. 특별보호조치 ②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7-3. 경제적 착취	7-3-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근로조건 수준	7-3-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7-3-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7-3-2. 근로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7-3-3. 청소년 근로시 폭력예방노력정도	7-3-3-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수 7-3-3-2.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7-4. 성적 착취	7-4-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 7-4-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7-4-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7-4-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7-4-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7-4-2-3. 성적피해시 도움제공자*
	7-4-3.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7-4-3-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7-4-3-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3년주기)
		7-4-4-1.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7-4-4.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4-4-2.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인원
		7-4-4-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3. 연구 방법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방법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설문조사 방법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전국의 초(4~6학년), 중(1~3학년), 고(1~3학년) 학생
표집틀	2017년 교육통계연보
참여자 수	9,060명
추출학교 수	전국 17개 시도 336개교
표집 방법	층화 다단계 집락표집
조사 시기	2018년 5월~7월
조사방법	학교 방문 집단 면접 조사 (자기기입식 응답)

조사방법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전문가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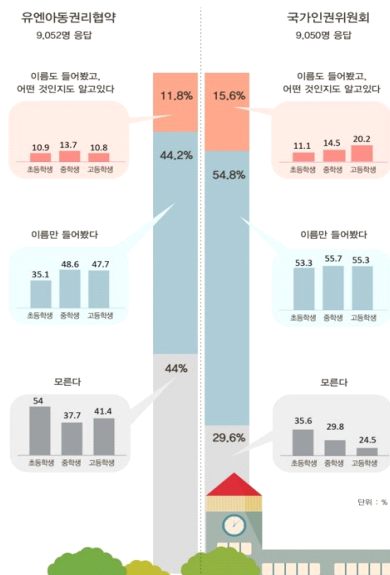
주요 요소	내용
표본수	29명
선정방법	권리 클러스터별 전문가 배분 (학계, 법조계, 교육계, 현장전문가 등)
조사시기	2018년 10월
조사방법	이메일 조사

04. 주요 결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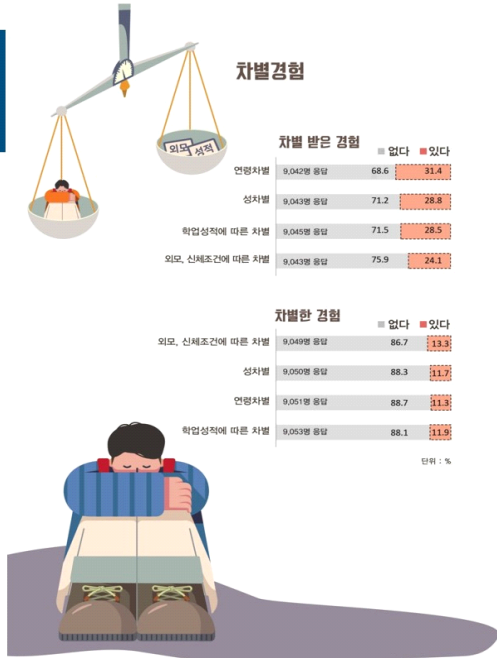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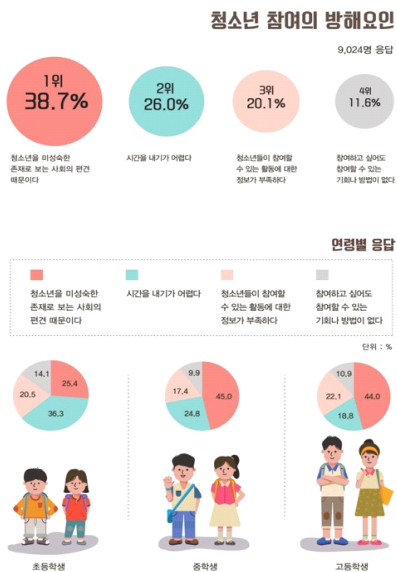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아동·청소년은 44%, 이름만 들어본 아동·청소년은 44.2%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11.8%에 불과함
- 국가인권위원회를 알고 있는 비율은 더 높았으나,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6%에 불과함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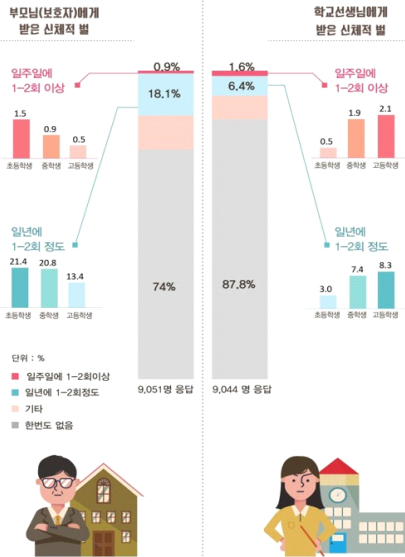
- 차별 받은 경험은 연령차별(31.4%), 성차별(28.8%), 학업성적 차별(28.5%),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24.1%)로 나타남
- 차별을 한 경험은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13.3%), 학업성적 차별(11.9%), 성차별 (11.7%), 연령차별 (11.3%) 등으로 나타남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편견'이라는 응답이 38.7%,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응답이 26.0%,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가 20.1% 등으로 나타남
-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초25.4%, 중 45.0%, 고 44.0%)

최근 1년 이내 부모,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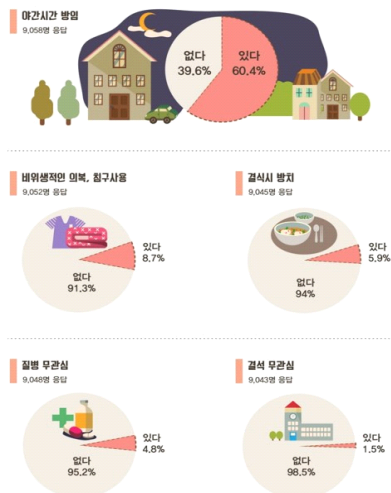
3. 폭력 및 학대

- 부모님(보호자)에게 체벌을 받지 않는 아동·청소년은 74%, 학교 교사에게 체벌을 받지 않는 아동·청소년은 87.8%로 나타남
- 학교에서 체벌을 받는 청소년의 수는 많이 감소한 반면, 집에서 체벌을 받는 청소년은 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년째 비슷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
- 체벌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서적 폭력은 몇 년 간 감소 경향을 보이다 다시 증가되거나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5

KIPR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방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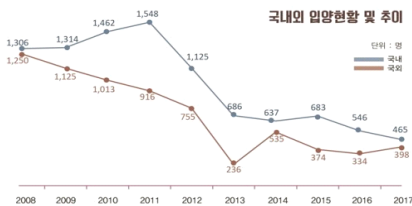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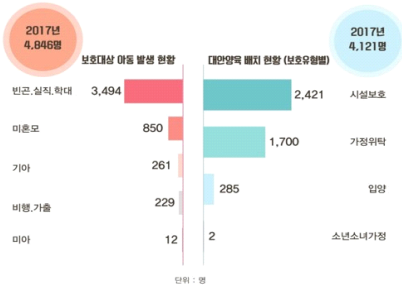
3. 폭력 및 학대

-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60.4%이며, 이 중 초등학생의 경험률은 51.8%로 높게 나타남
- 비위생적인 의복, 침구를 사용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8.7%
- 자신이 식사를 못해도 보호자가 신경 쓰지 않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5.9%
- 자신이 아파도 내버려둔 적이 있는 보호자는 4.8%
- 자신이 학교에 결석해도 보호자가 신경 쓰지 않는 경우는 1.5%

26

KIPR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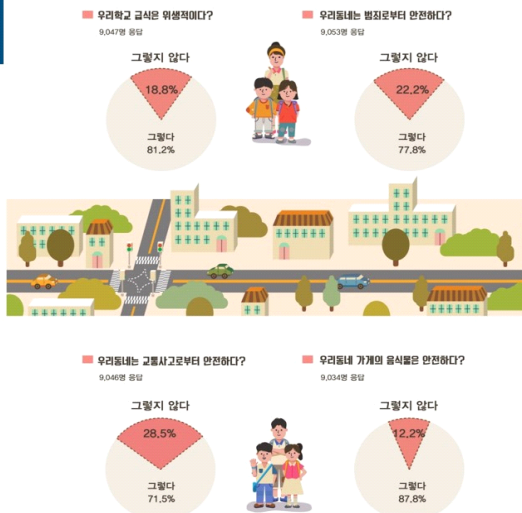
보호대상 아동 발생 및 대안양육 현황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보호대상 아동 발생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빈곤, 실직, 학대'로 2017년 3,494명 발생
- '미혼모'는 그 다음으로 850명, '기아'는 261명, 비행과 거울은 229명 발생. 미아는 12명
- 대안양육의 배치는 여전히 시설보호가 2,42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위탁이 1,700명으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입양은 285명으로 가장 비중이 낮음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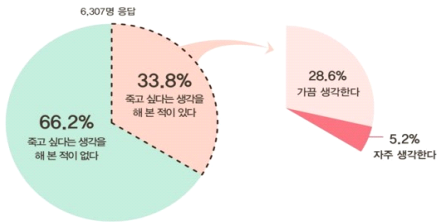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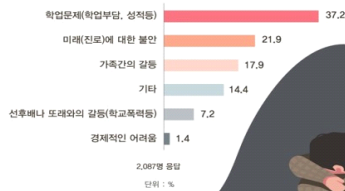
- 우리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22.2%
- 우리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28.5%
- 우리동네 가게의 음식물은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12.2%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정도



죽고 싶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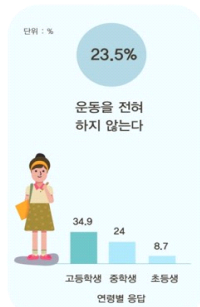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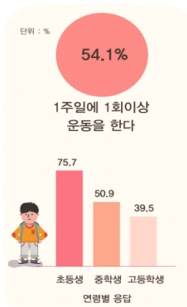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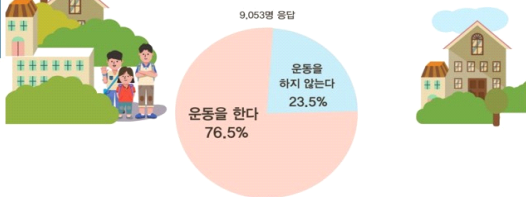
-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33.3%
- 이 중 가끔 생각한다는 응답은 28.6%, 자주 생각한다는 응답은 5.2%
- 죽고 싶은 이유는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37.2%,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21.9%, 가족간의 갈등 17.9% 등

29

KIPR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실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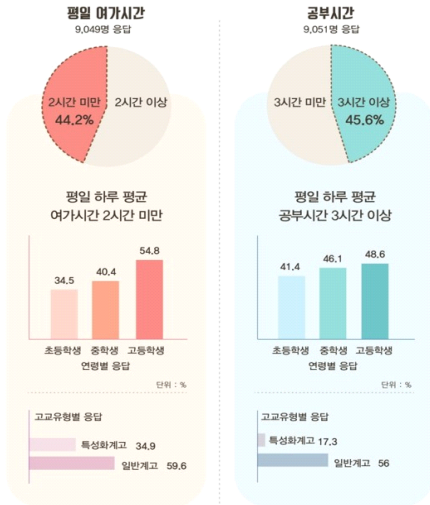


-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23.5%
- 1주일에 1회 이상 운동을 하는 아동·청소년은 초 75.7%, 중 50.9%, 고 39.5%
-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은 초 8.7%, 중 24%, 고 34.9%

30

KIPR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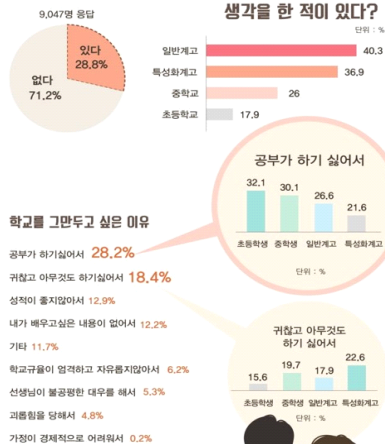
평일 여가시간 및 공부시간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인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44.2% (초 34.5%, 중 40.4%, 고 54.8%)
- 평일 하루 평균 공부시간이 3시간 이상인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45.6% (초 41.4%, 중 46.1%, 고 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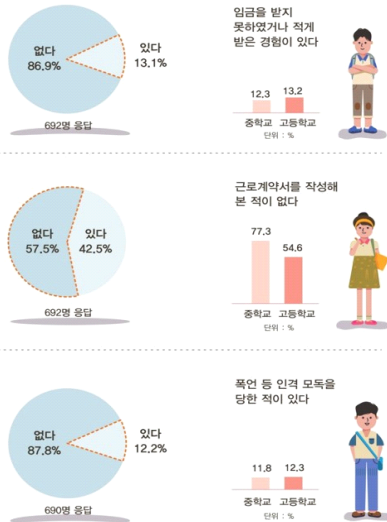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28.8% (일반고 40.3%, 특성화고 36.9%, 중학교 26%, 초등학교 17.9%)
-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가 28.2%,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가 17.4%,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12.9%,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가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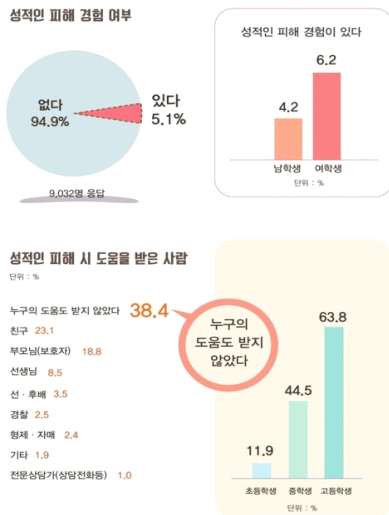
근로 시 청소년 부담처우 경험률



7. 특별보호조치

- 아르바이트를 해 본 아동·청소년 중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적게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1%
- 근로계약을 작성해 본 적이 없는 아동·청소년은 57.5%
-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12.2%

성적인 피해 경험



7. 특별보호조치

- 성적인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5.1%, 남학생이 4.2%, 여학생이 6.2%
- 성적인 피해 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38.4%
- 고등학생이 63.8%, 중학생이 44.5%, 초등학생이 11.9%
- 공적 보호체계인 경찰(2.5%), 전문상담가(상담전화) (1.0%)로 매우 낮게 나타남

권리 클러스터의 지표 결과 요약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은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2 개의 중분류, 5개 지표(소분류), 총 11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됨.
- 인권 인프라와 관련하여 2018년도에 아동수당법 제정, 아동학대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법 개정, 청소년 참여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 기본법 개정 등이 이루어짐.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2.7%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11.8%, 6.6%, 15.6%로 여전히 낮으며, 협약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44.0%로 절반에 이르고 있음.
-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는 가정(95.2%), 지역사회(90.6%), 학교(90.6%), 사이버 공간(78.4%), 우리나라 전체(77.9%) 순으로 나타났다.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률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존중 정도만 낮아졌음.
-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87.5%)과 학생자치조직 의의(82.3%)에 대해 높은 인식을 나타냈으며, 표현의 자유(95.8%), 경제적 이유로 차별금지(97.2%), 양성평등(96.2%), 이주배경 주민의 교육권(93.6%) 등에 대해서도 높은 인식을 보여줌.
- 인권교육 경험률은 70.2%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인권교육 경험자의 75.1%가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1년에 1회 이상 차별 가해 경험은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이 13.3%로 가장 많았고, 학업성적(11.9%), 성별(11.7%), 연령(1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차별 피해 경험은 연령에 따른 차별이 3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별(28.8%), 학업성적(28.5%), 외모 및 신체조건(2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권리 클러스터의 지표 결과 요약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은 의견표명권과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 5개 중분류의 20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됨.
- 가정에서의 참여정도는 진로(직업)(94.2%), 상급학교 결정(92.9%), 집안 중대사 결정(91.2%), 공부시간과 방법 결정(89.5%) 등의 순으로 자녀 의견 존중도가 높게 나타남. 학생회 운영의 자율권 보장정도는 자치권 보장(31.7%), 학생회 의견존중(36.9%), 학생회 임원 후보 성적 제한 없음(38.0%), 예산·장소·시간 보장(40.3%) 등으로 낮은 수준임.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및 의견표명권은 18.6%로 여전히 낮고,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율은 7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는 2013년 이후 더 늘어나지 않고 각각 189개, 305개로 정체되어 있음.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11.5%로 여전히 낮고, 참여기구 활동 경험률은 2.2%로 큰 변화가 없음. 선거연령 하향화의 의견은 35.7%로 전년도에 급격한 상승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하였음.
-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62.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참여의 방해요인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8.7%), 시간 부족(26.0%), 활동정보 부족(20.1%), 참여기구나 방법 부족(11.6%) 순으로 나타남. 학교 종교행사 의무참여율은 67.4%로 전년도(62.7%)보다 다소 하락함. 사회문제 관련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12.2%)은 전년도(17.2%)보다 감소함.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음모 검사(52.5%), 복장 검사(48.7%), 소지품 검사(18.0%) 모두 경험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줄어듦.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비 미납자 이름(11.1%), 정제사항(10.4%), 시험성적(20.2%) 공개비율 모두 낮아져 정보 보호 실태는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청소년 생활·문화의 주요 영역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사이버공간의 인권이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학생들에게 학교규칙 공지(88.4%),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책 홍보자료(17.9%),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17.1%), 권리상당 및 구제기관 정보(27.0%) 제공 등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권리 클러스터의 지표 결과 요약

3. 폭력 및 학대

- 「폭력 및 학대」 영역은 2개의 중분류와 4개의 소분류로 구성됨. 중분류 수준은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와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였음.
- 청소년폭력 경험을 중 정서적 폭력 경험률은 부모, 교사, 또래 등으로부터의 모욕이나 욕설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였으며, 부모로부터는 31.1%, 교사로부터는 18.9%, 또래로부터는 15.1%가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래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은 6.6%로 나타났고, 따돌림 피해경험은 5.6% 등이었음. 중고등학생의 경험 비율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 초등학생의 경험 비율은 약간의 증가경향이 나타났음. 또래로부터의 성희롱이나 추행 경험은 4.3%였음. 사이버상에서의 정서적 폭력 피해경험은 16.6%, 성희롱 피해경험은 4.2%, 사생활 공개 피해경험은 5.3% 등이었음.
- 가정, 학교, 학원에서의 체벌경험률을 보면,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체벌경험비율은 26%, 교사로부터의 체벌경험비율은 12.2%, 학원 교사로부터의 체벌경험비율은 5.9%였음. 학교와 학원에서의 체벌경험비율은 연도별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가정에서의 체벌경험비율의 감소폭은 크지 않아서 가정 내 체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사회적 인식변화와 인프라 확충 등으로 중앙아동보호기관이 접수한 아동학대의 신고건수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종사자의 수는 부족하고, 지역 간 격차도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 아동학대사례를 보면 중복학대 사례가 48.0%로 가장 많고, 정서학대가 19.2%, 방임이 15.6%, 신체학대가 14.5%였음. 성학대는 2.6%로 비율이 낮았지만 주피해자는 연령별로 13-15세, 성별로 여자 청소년이었음. 방임에 대한 자기보호 응답 결과를 보면, 밤늦게 까지 부모님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60.4%로 과반수 이상이 부모의 돌봄 부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거나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8.7%였고, 식사를 못해도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아동·청소년은 6%, 자신이 아파도 부모님이 그냥 내버려둔 경험이 있었던 아동·청소년은 4.8%, 학교를 결석해도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는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1.4%였음.

37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권리 클러스터의 지표 결과 요약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은 3개의 중분류와 6개의 소분류로 구성됨. 첫 번째 중분류는 부모의 지도와 책임, 두 번째 중분류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임. 부모의 지도와 책임 영역에서는 가정 내 아동·청소년들의 가족과의 생활과 보호·보호 실태를 살펴보았음.
-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보면 주중 1시간 이상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경우는 16.6%, 어머니와 1시간 이상 대화하는 경우는 37.4%였음. 반면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는 아버지 6.2%, 어머니 1.4%였음. 일주일에 부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횟수는 매일 같이 하는 경우가 27%, 주4-6회를 하는 경우가 24%, 주1-3회를 하는 경우가 32.9%였음. 반면 월 1-3회를 하는 경우가 11.6%,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4.5%로 나타났음. 보육시설 이용실태를 보면, 0-2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 92.3%였고, 3세 이상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률은 66.1%였음. 어린이집의 보육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2013년 4.9명에서 2017년 4.4명으로 감소하였음.
- 학령기 아동·청소년들의 돌봄 상황을 살펴보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중고등학생의 참여는 점차 감소하고 있었음. 방과후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은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았으나 중고등학생은 교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개소수와 이용인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만족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은 2017년에 4,846명이 발생했음. 보호대상아동의 주요 발생원인은 빈곤, 실직, 학대,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으로 전체의 72.1%였음. 미혼자녀 출산은 발생원인의 17.5%로 나타났음.
-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아동 수 감소로 점차 감소되고 있음. 대안양육 배치 결과를 보면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가정위탁 보호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음. 입양아동 수는 입양특례법 개정과 보호대상아동의 감소로 점차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고 있음. 2017년에는 국내입양 아동이 465명, 국외입양 아동이 398명이었음. 대안양육 배치에서 가정위탁보호의 구성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조부모에게 양육 받는 대안양육위탁이 7,950명, 조부모 이외의 친인척에게 양육 받는 친인척위탁이 3,100명, 그 외의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인 일반가정위탁이 933명으로 일반가정위탁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음.
- 최근 1년 간 가출해본 청소년은 3.8%였음. 가출경험 비율은 중고등학생들은 감소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은 낮게 유지되고 있었음. 가출이유는 상당수는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이었음. 가출을 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조금씩 확충되고 있지만,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88.1%는 아무런 청소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청소년쉼터를 이용해본 사람은 4.9%에 불과하였음.

38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권리 클러스터의 지표 결과 요약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은 중분류 수준에서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특수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였음. 특수학급에 배치된 장애아동·청소년의 수는 2011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인 반면, 일반학교에 배치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수는 2012년 이후 감소추세임. 장애청소년의 고졸 이후 진학률과 취업률은 모두 감소한 반면, 무직률은 증가함.
- 아동·청소년의 생존 및 발달과 관련하여 0세의 기대여명은 2016년 현재 82.36세이며, 영아의 사망률은 1,000명당 2.8명임. 연령별 사고사망률은 14세까지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15세부터 급격한 증가패턴을 보임. 사고사망의 주요 외인은 운수사고였으며, 15세 이후부터는 자살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임. 범죄 피해율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거주지역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음.
- 아동·청소년의 보건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아토피 피부염과 폐렴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보건교사는 학교 중 64.5%에 배치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와 보건소 포함 신체·정신건강관련 시설들은 보건진료소, 특수병원 중 결핵과 한센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에서 증가함.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45.7%였음. 연간 병원 미치료율과 치과 미치료율은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음.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아동·청소년의 87.1%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였으며, 54.1%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하였음. 70.0%는 아침식사를 하였음.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17분으로 전년도와 유사하였으며, 과반수 이상(52.4%)은 수면부족을 호소함. 수면부족의 이유는 가정학습과 학원 및 과외가 가장 높았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청소년의 33.8%가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으며, 1/3정도는 우울증관련 경험을 하고 있었음. 스트레스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높아졌으며,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의 17.0%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함. 고민거리의 주된 대화상대는 어머니와 친구였으며, 없다는 응답도 9.0%로 상당히 높았음.
- 절대아동빈곤율과 상대아동빈곤율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24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수는 전체 수급자의 약 30.6%였으며, 한부모 가구는 2008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임. 드림스타트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역시 현재까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권리 클러스터의 지표 결과 요약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서 각 세부지표들의 2018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2016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5세~14세가 97%로 OECD 평균 98%보다 낮았으나, 15~19세가 87%, 20~24세가 50%로 OECD 평균(15~19세 85%, 20~24세 4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학생들의 학교급별 진학률에 있어서는 2015년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일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평균 78%에 가까워 세계 최상위에 해당되고 있으나, 직업계고인 특성화고의 진학률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 있어서는 초중등교육과정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과정에서는 OECD 평균보다 많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임.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에서는 전반적으로 인구의 자연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되는 추세라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OECD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임.
- 학업중단율이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각급학교의 학업중단율이 미세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업중단자 수로 보면 지난 6년 간 누적 계수가 총 325,452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학업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교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바람직한 인성, 배려와 공동체 의식, 실용적 지식에 대한 교육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상황에 대처한 대안교육의 실태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주목할 만 한 변화는 없으나,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유럽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업계고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가, 놀이 및 문화, 예술 활동에서는 문화, 예술 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및 이용시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할 청소년수련시설을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57.2%로 나타나 정책적 문제와 과제로 드러남.
- 여가, 문화, 예술 활동에의 참여율은 취미와 오락 활동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평일 여가활동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 학생이 16.8%에 해당하고 있고, 학업부담이 많은 고학년 및 일반고제일수록 상대적으로 평일에 여가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평일과 휴일의 전체 여가시간 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의 비중이 각각 74.1%와 51.0%로 나타나 상황이 매우 심각함. 청소년 단체활동과 동아리활동에의 참여율은 청소년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청소년이 86.0%, 동아리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이 75.9%로 조사되었음. 응답청소년의 73.2%는 부모로부터, 78.3%는 학교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권리 클러스터의 지표 결과 요약

7. 특별보호조치

- 「특별보호조치」 영역은 중분류 수준에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소년사범 아동,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 2017년 현재 전체 난민신청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약 4.0%이며, 201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은 매년 증가함.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은 2014년 대비 소폭 감소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프로그램 참여율과 관련하여 다문화예비학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레인보우스쿨 참가자도 매년 증가 추세임.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7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2016년에 총 2,018명이며,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은 2015년 이후 증가추세이고, 주요 범죄유형은 강간과 폭력·상해, 절도, 강도 등임. 성폭력범죄와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피해자의 법률적 부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선변호사 접수건수와 지정전수, 지정률은 모두 매년 증가함. 소년원의 교육체계는 전년대비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소년교도소 수용청소년의 처우불복제도 신청건수는 청원과 고소·고발이 가장 많았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수는 감소추세이며, 청소년대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자 수 역시 소폭 감소함.
-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2016년 기준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1.2일, 월평균 근로시간은 177.0시간으로 전년대비 증가함.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11년 이후 증가추세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11.0%였으며, 아르바이트 피해경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3.0%, 근로계약서 미작성 67.5%, 폭언 등 인격모독 경험 12.2%, 구타/폭행 경험 3.3%, 성적피해경험 2.9%로 나타남. 2017년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서도 22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많았음.
-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76.2%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임. 성범죄자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신상공개자 역시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 이후 소폭 감소함. 2017년의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의 비중은 33.1%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폭력 피해자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은 30개소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전년대비 증가함.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200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실적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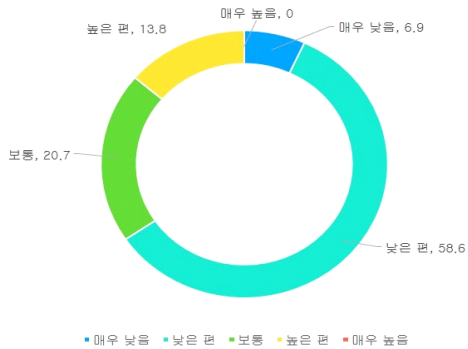
전문가조사의 주요 결과

- 아동·청소년의 인권 관련 학계, 법조계, 교육계,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음. 전문가조사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권상황 평가 및 전문영역에 관한 전반적 의견 등임.
- 전문가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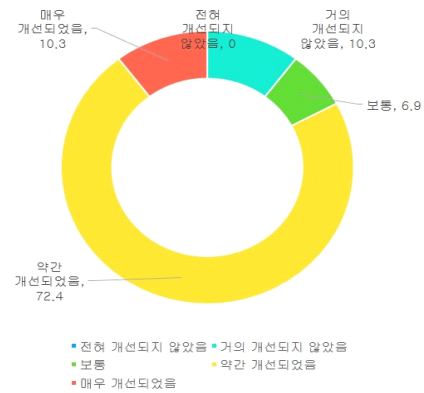
전문가조사의 주요 결과

아동· 청소년 인권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지난 10년 간 개선 여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전반적인 아동·청소년의 인권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0년 간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수준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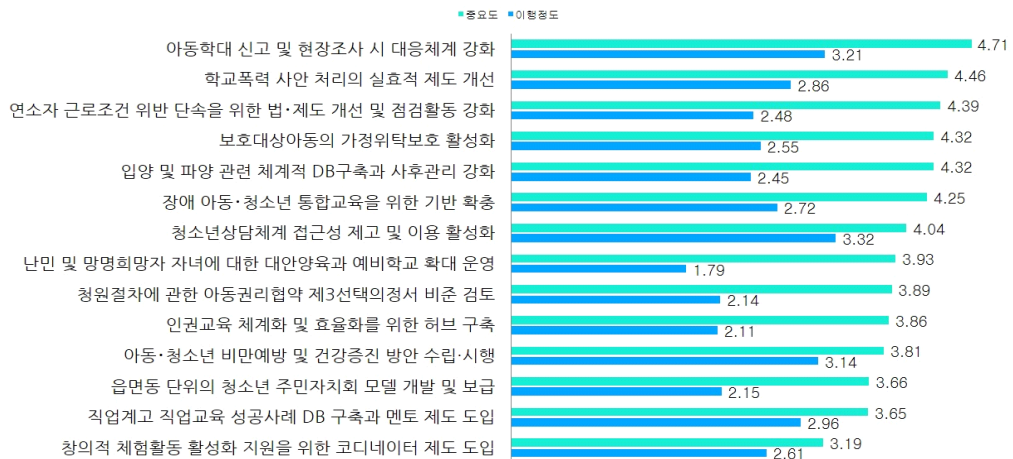


43

KIPR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조사의 주요 결과

아동· 청소년 인권 개선과제의 중요도와 이행정도



44

KIPR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조사의 주요 결과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의 방해요인 (정부, 법제도, 학교, 연구, 사회문화, 개인 차원)



응답범주는 최소 1점(전혀 동의하지 않음), 최대 5점(매우 동의함)까지임

45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조사의 주요 결과 (이어서)



응답범주는 최소 1점(전혀 동의하지 않음), 최대 5점(매우 동의함)까지임

46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조사의 주요 의견

인권 클러스터	세부영역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아동·청소년의 소송능력 인정 • 아동권에 대한 면밀한 진단 및 이에 맞는 정책 필요 • 아동이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 전환 필요 • 차별금지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청소년의 민주적 참여기회 확대 • 학교 내의 참여기회 확대 방안 마련 •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 권력의 실현
3. 폭력 및 학대	• 아동보호체계 개편 (예산지원 및 컨트롤타워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 통합적 대응체계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확충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 방임에 대한 개입 확대 • 가정 내 차별금지

전문가조사의 주요 의견

인권 클러스터	세부영역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헤이그국제아동임양협약 비준 (해외임양제도의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법안 개정) • 임양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체계구축 • 빈곤과 미혼출산 등으로 인한 원가족 분리기 되지 않도록 지원 강화 • 원가족 분리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 원가족 복귀를 위한 정부노력 강화 •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강화 • 임양숙려제의 기간 연장 • 미혼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강화 (친생부모의 양육 지원 강화) • 아동중심의 국내 임양 활성화 방안 도입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지향하는 양육방식 결정 • 보호대상 아동 지원은 지방사무가 아닌 중앙부처의 정책으로 전환 •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식변화 및 지원강화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사회양극화로 인해 소외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 아동의 발굴과 지원 강화 • 사회보장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전문가조사의 주요 의견

인권 클러스터	세부영역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초중고 등 모든 수준에서의 아동·청소년 참여 진작 노력 - 놀이 권리 확대, 여가와 휴식을 취할 권리 보장 - 학교 내 혐오 증가에 대한 대처(인터넷을 통한 혐오 표현 확산 방지) -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참여기회 확대 - 중도탈락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 다문화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7. 특별 보호조치	- 난민아동의 출생등록 보장(보편적 출생등록), 교육권 및 건강권 보장 - 난민아동과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강화 (보육지원 포함) - 난민아동의 난민인정율 증대 -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 방안 강화 - 일하는 청소년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일하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강화 - 일하는 청소년의 권익보호 청구 다양화 및 적극적 권익구제 체계 마련 -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법제도 변화 필요 - 소년재판에 법원선의주의 도입 - 소년의 품행 교정을 위한 사법체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적 변화 - 소년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의 인권 감수성 증대

05. 논의 및 결론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과 평가

현황 및 평가

-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으며, 이와 비례하여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수준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전문가 조사의 결과와 같이 여전히 아동·청소년의 인권 수준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음. 보편적인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 수준 역시 낮은 편
 - 보편적인 아동·청소년들은 극심한 학업 경쟁의 환경에 놓여 있음.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은 학업을 위해 현재의 삶의 질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이 향유해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청소년들은 다른 대상들과 인권 보장 수준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장애여부, 출신국가, 학력(학업수준) 등에 따라 인권 보장 상황의 차이 발생 (사회적 배제 및 차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과 평가

논의

- 지속적인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음

아동·청소년 권리의 발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은 어디에 있었는가?

- 아동·청소년 인권 발전에서 아동·청소년은 주체라기보다는 객체로 존재해왔음
- 사회로부터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발전하였고, 아동·청소년은 서비스의 수혜자나 소비자로서 존재하는 한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과 평가

논의

- 아동·청소년 개인의 권리 미보장을 파악하는 사회적 방식은 매우 사후적. 피해자와 희생자가 되어야 사회제도가 발전하는 방식으로는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한계.
-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참여하여 협상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수적임
-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보장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기회, 창구, 제도가 존재해야 실질적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

THANK YOU

msyoo@nypi.re.kr



주제발표 2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강화 - 포용국가 아동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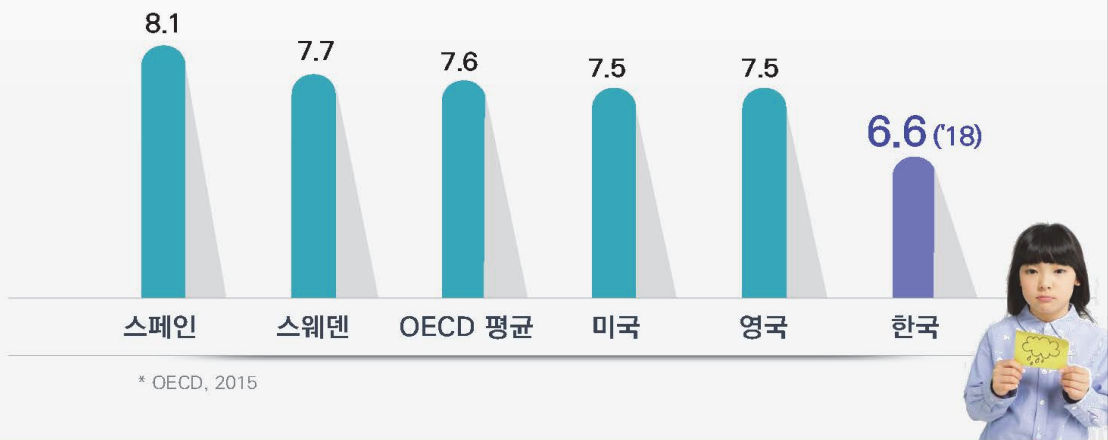
성 창 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





추진배경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아동의 삶,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 수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부족

민간기관에 의해 달라지는 아동의 운명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유 부족

양육과 훈육의 대상으로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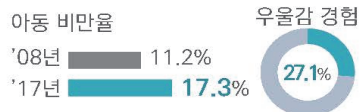


(‘19. 체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대한민국 아동의 삶

건강위험요인 증가

신체활동 부족, 우울감 등 마음건강 우려



(‘18.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시간부족·관계 결핍

가족·친구와의 시간 및 놀이 인식 부족



(OECD 아동 삶의 질 보고서)

아동이 행복한 나라

“내일 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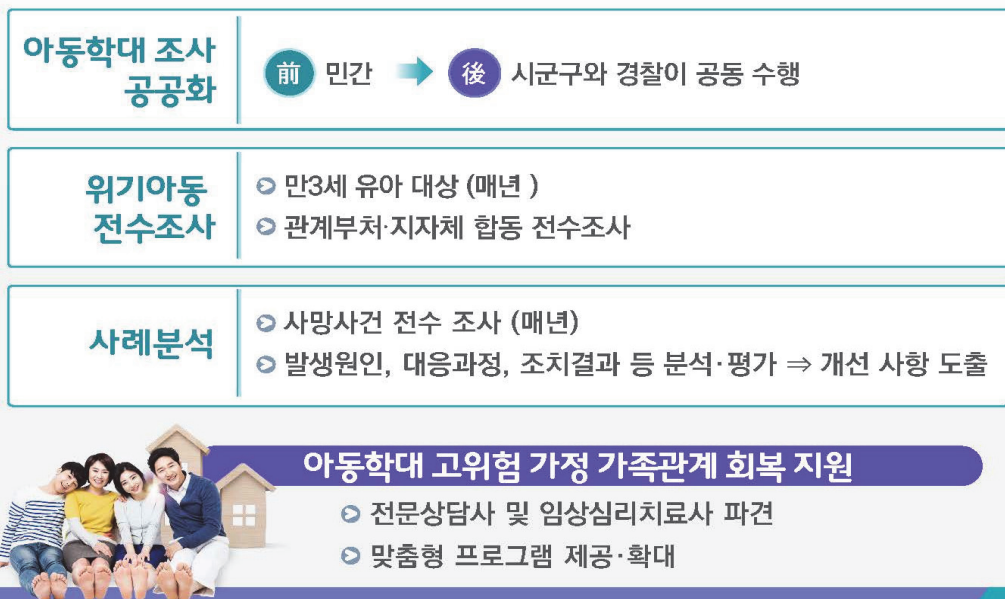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체계적인 공적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2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3 보호 종료 후 안정적 자립 지원 강화

보호
중

▶ 진로교육 및 자립역량 강화

- ◉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 지원
- ◉ 단계·수준별 자립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 ◉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보호
종료

▶ 안정적 자립 유도

- | | |
|--|--|
| 소득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수당 월 30만원 ◉ 기초생활보장기준 완화 ◉ 원룸형 주거 제공 ◉ 맞춤형 사례관리 ('19.6월, 240호) ◉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복지부)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
|--|--|

▶ 실태조사

- ◉ 보호종료 아동 연락체계 구축
- ◉ 자립현황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7

4 누락 없는 출생 등록

출생
통보제

- ◉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국가기관 등에 통보
⇒ 위기아동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보호
출산제

- ◉ 의료기관 출생회피 등 부작용 최소화

보호(익명)출산제

모가 일정한 상담을 요건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9

5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등 아동 권리 강화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전환
- 아동의 권리 존중을 위한
정부-아동권리보장원-아동인권단체
공동 캠페인 진행



아동의 법적지위 강화

- 친권자의 '징계권'(민법 제915조)
용어 변경 검토
-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 제외 등 한계 설정 방안 검토



9

6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중 앙

아동 의견이 반영된 정책결정

- 아동총회 결과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심의 제도 도입

“대한민국 아동총회” (복지부 주최, 아동단체 주관)

-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아동 참여권 실현을 위해
2004년 부터 매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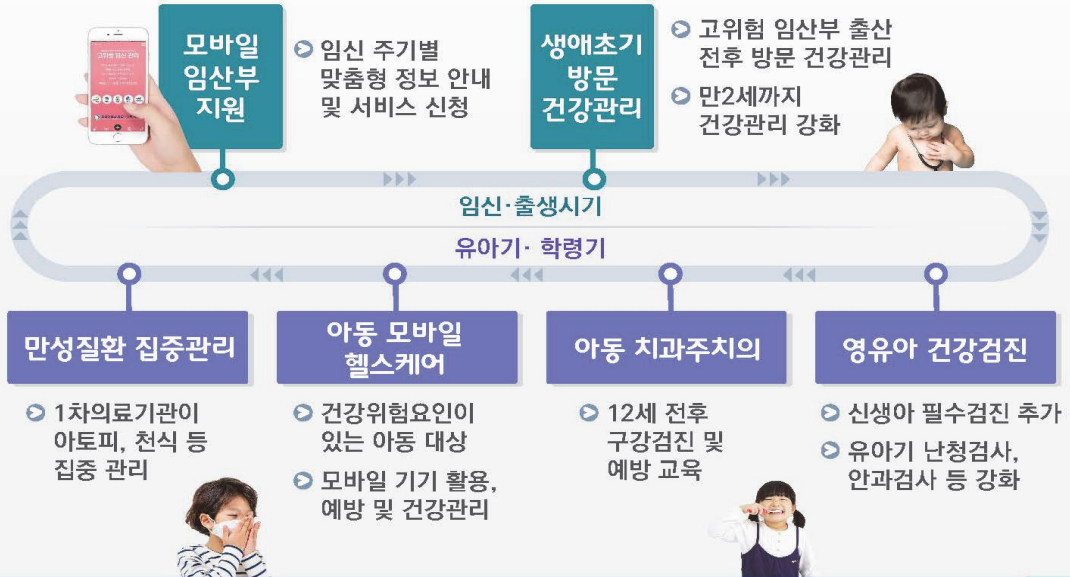
지 역

아동 의견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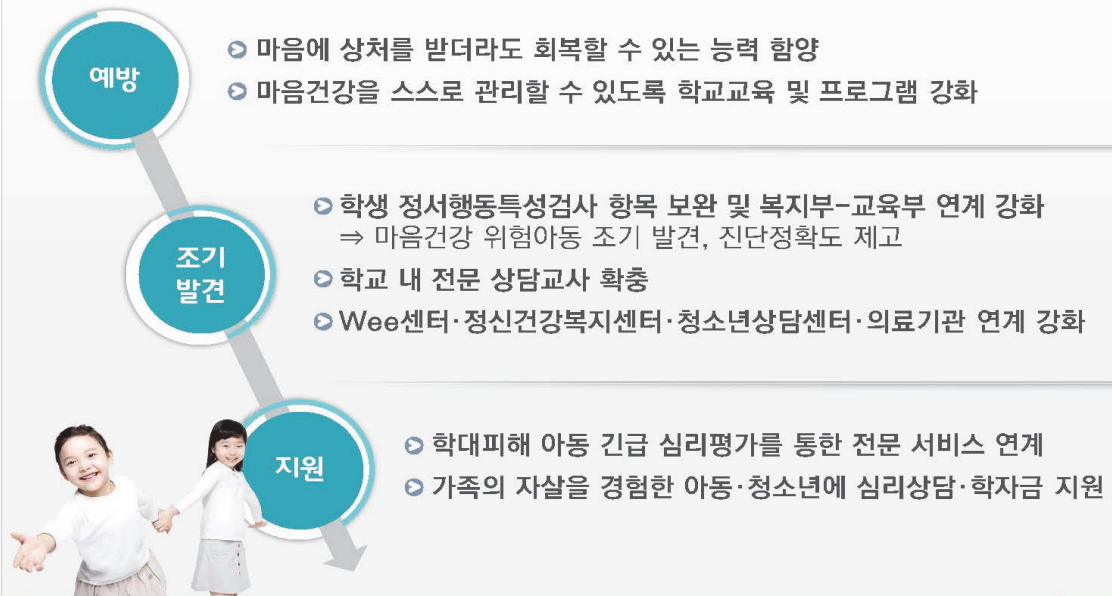
- UN 아동권리협약 상의 ‘아동의 참여’가 지역사회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참여 우수사례 확산
- 아동정책영향평가 본격 시행 ⇒ 아동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

10

7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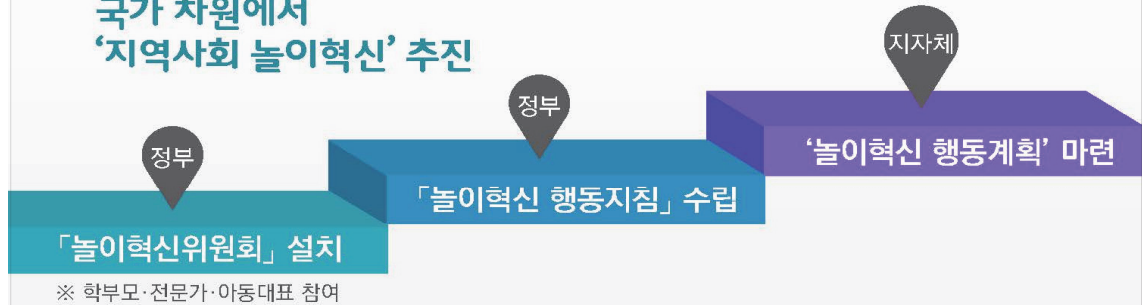


8 예방부터 치료까지 마음건강 지원 강화



9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
‘지역사회 놀이혁신’ 추진



놀이혁신
선도지역
지정

- 아동·아동단체·학교·주민의 참여를 통해 마을여건에 맞는 놀이사업 개발
- 지자체에서 협력체계·프로그램·인력·공간 등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 아동친화적 환경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연계·지원

13

10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시간확보	공간확보	프로그램
• 유치원·어린이집·초등 저학년 놀이를 통한 역량개발 기회 확대 • 누리과정을 놀이 중심 과정으로 개편 • 쉬는시간 활용 모형 개발 • 놀이과정 반영 교육과정 개발	• 교실 ⇒ 모둠활동 위한 아동친화공간 • 교내 자투리 공간 ⇒ 실내 놀이실 • 운동장·체육관 ⇒ 구역형 놀이공간	• 놀이연계 수업 확산 • 마을·학교 단위 스포츠 클럽 지원 • 학교에 국악·연극 등 문화예술교육 강사 지원

14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아동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둔 정책추진

정책적 의미

-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지자체 중심 아동보호체계 확립
⇒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하 변화의 출발점
⇒ 입양, 가정위탁, 시설 등 보호체계 변화를 위한 실천 필요
- 놀이, 참여, 건강 등 아동권리 중심의 접근 강화
⇒ 상당한 시간 필요,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접근

향후일정



-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19년 말 또는 '20년 초)

15



[부록] 포용국가 아동정책 보도자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 아동이 행복한 나라, 내일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 -

- ▲ 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4대 전략(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16대 과제(40개 소과제), 10대 핵심 추진과제 마련
- ▲ 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 시군구에서 직접 조사·보호결정·사례관리·원가정 복귀 지원, 아동학대도 시군구 공무원이 직접 경찰과 함께 조사
- ▲ 아동모바일 헬스케어, 아동 치과주치의,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통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아동 건강
- ▲ 지역사회 놀이 확산, 학교 창의 놀이를 통해 아동의 창의성·사회성 계발

- 정부는 5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하였다.
 - 이는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 *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19.2.19. 보도자료 참조)
-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면서, 아동의 권리로서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
-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에 따라 4대 전략, 16대 과제(40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영역에서 주요과제 중심으로 1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의 **보호권**은 ①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②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③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과제가 포함되었다.
 - 아동의 **인권 및 참여권**은 ④누락 없는 출생등록 ⑤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⑥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과제가 제시되었다.
 - 아동의 **건강권**은 ⑦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⑧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이 제시되었다.
 - 아동 **놀이권**은 ⑨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⑩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

첫째,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국가가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둘째, 가정과 지역사회, 정부가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생애 초기부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돌보겠습니다.

넷째, 아동이 행복하고, 창의성·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에서의 놀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전

아동이 행복한 나라
“내일 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



4대 분야

10대 핵심 과제

보호권

-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 ②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 ③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인권
·
참여권

- ④ 누락 없는 출생등록
- ⑤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 ⑥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건강권

- ⑦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 ⑧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

놀이권

- ⑨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 ⑩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보호권] 핵심과제1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핵심과제2 :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핵심과제3 :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현황 및 추진배경

- (민간에 의해 좌우되는 아동의 인생)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아동 수는 연간 4,000~5,000명 수준이며, 분리보호 중인 아동은 약 4,400명*이다. *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이 아동들은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최초 의뢰된 곳이 입양 기관이면 입양절차를 밟고, 양육시설이면 시설에서 자랄 가능성이 크다.
- * 최초에 보호자가 어디서 상담했는지에 따라 아동의 인생이 달라지는 시스템
- 아동들의 다수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시설에서 자란다.
- (학대조사의 공적 개입 미흡)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판정되고, 매월 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조사 및 판정에 대한 공적 개입은 취약하다.
- 신고·접수 및 학대조사,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등의 업무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강제력 행사 업무까지 수행함에 따라 조사거부, 신변위협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 미·영·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는 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 판정 권한 보유
- (사회에서 자립하기 어려운 아동) 시설 등에서 자라서 사회로 나가는 보호종료 아동은 기초생활수급 경험률이 40.7%에 이르며, 월평균 소득은 123만원 수준에 그쳐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F4 (핵심과제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 **[공적 결정 강화]** 부모로부터 분리될 위기에 처하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확실히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학대, 입양의뢰, 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 유기 등 어떤 경로로 보호 필요 아동이 발생하더라도,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지 판단한다.
 -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입양 등)을 결정한다.
- * 담당 공무원, 아동관련 전문가, 사례관리사 등으로 구성 예정
- 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라는 동안에도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아동과 원가정을 관리·감독(모니터링)하면서,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대리 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담인력 배치]**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인력 보강이 필수적이다.
 - 현재 시군구의 평균적인 요보호아동 수는 192명이나, 담당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아동 개개인에 대한 가정조사, 보호 결정, 사례관리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 정부는 지자체 인력 보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책임 하에 상담·가정조사·보호결정·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원가정 복귀 지원]** 불가피하게 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대리 보호되는 아동들이 하루 빨리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의 정기적 면접을 지원한다.

○ 내년 상반기,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 시설 및 그룹홈 종사자, 위탁 부모 등이 아동과 원가정과의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기술적·전문적 지원도 해나간다.

* 부모-아동 간 정기적인 접촉을 한 경우, 10배 이상 재결합 확률이 높음('96, Landsverk)

□ **[전문가정위탁 도입]**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질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한다.

○ 현재 조부모·친인척 위탁이 아닌 일반 가정위탁은 7.8%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특수한 욕구가 있는 영아·학대피해아동 등을 돌보기 위한 전문 인력은 크게 부족하다.

○ 이에 정부는 전문인력이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 또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인상하고, 초기 정착금, 심리치료비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체계 마련]** 민간에 의존하고 있었던 입양체계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 지자체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에게 원가정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 입양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 예비 양부모의 사전위탁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하고,
 - 입양 전 법원 절차 진행과 입양 후 아동과의 애착 형성 등을 위해 '입양 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입양 후 아동이 입양가정 내에서 안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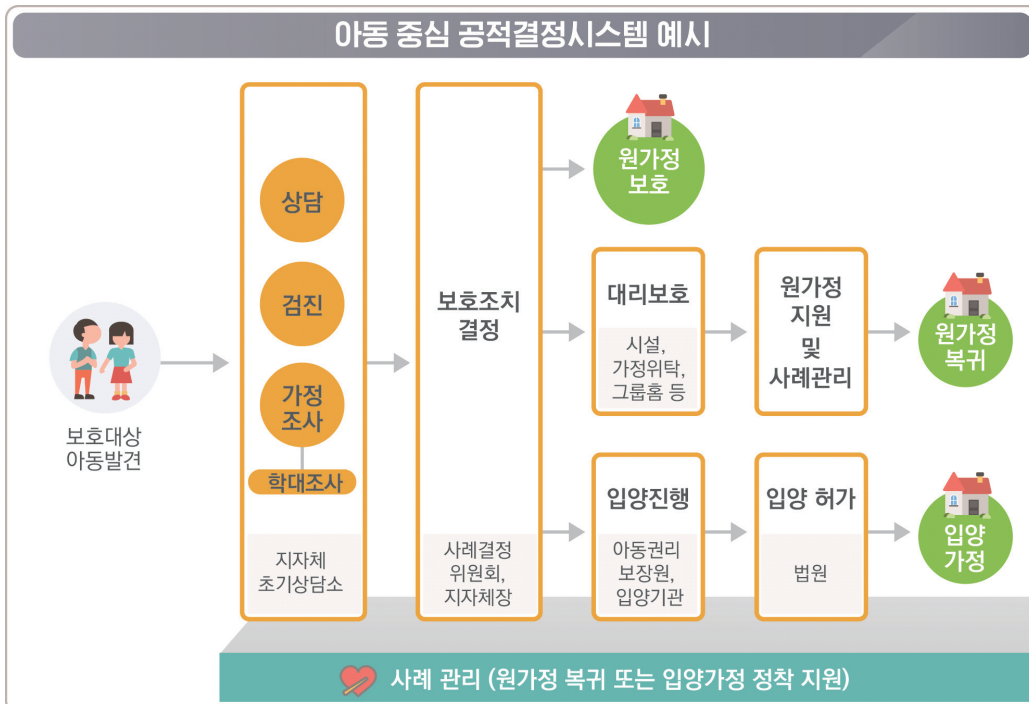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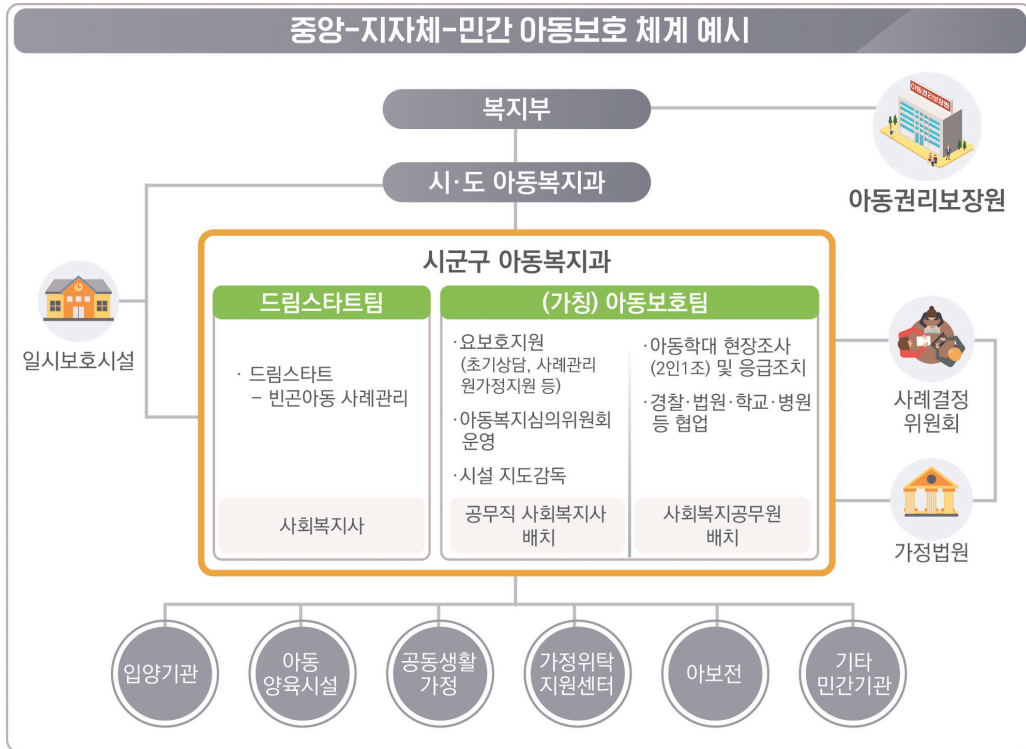
□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합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 올해 7월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발생 단계부터 보호종료 단계까지 아동중심적·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권리보장원은 통합되는 8개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총괄한다.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입양원
 - 아동복지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의 아동 관련 사업 평가, 아동정책 수립 지원 역할까지 하게 될 전망이다.
- 그동안 분산·운영되어온 아동 관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하고 일원화된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아동 개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동 통합 시스템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구축하고, 2022년 정식으로 개통한다.

F5 (핵심과제 2)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정부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 시군구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여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한다. ('20~'22)
 - 이에 따라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고, 학대여부 판단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 응급사태에 대해서는 조사 즉시 분리조치
 -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긴급 분리 후 재학대 위험이 사라지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나가는 데에 전문성을 더욱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생활비·생필품 제공, 피해자 상담 심리치료, 양육기술·방법 등 부모 교육), 사례 종결 후 사후관리 등
- **[위기아동 전수조사]** 올 하반기(10월 잠정)부터 연 1회 만 3세(전년도 말 기준) 유아 전체에 대해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아동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교육부(유치원), 지자체·경찰청(소재 파악 및 수사)
- 올해 조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약 40만 명, 읍면동 주민센터 가정방문을 통해 약 4만 명을 조사할 예정이다.
- **[사례분석]** 매년 사망사건 전수에 대하여 발생원인, 대응과정, 조치결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향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 **[관계 회복 지원]**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전문상담사 및 임상심리 치료사를 파견해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해나간다.

* 수행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19년) 39개 → ('20년) 50개 → ('21년) 모든 기관



③ (핵심과제 3)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보호 종료 전 지원]** 시설 등에서 자라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갔을 때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술 취득 및 학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미취학~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연령과 수준에 맞는 단계적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해나간다.
 - 다음달(6월)부터는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보호 종료 후 지원]** 성인이 된 후에는 소득, 주거, 취업 지원 등을 통해 보호 종료 초기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 * ① 소득지원 (자립수당 월 3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준 완화), ② 주거지원 및 사례 관리 ('19.6월, 240호), ③ 취업지원 연계 (보건복지부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 **[실태조사 및 지원]** 자립수당 지급을 계기로 보호종료 아동의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과 참여] 핵심과제4 : 누락 없는 출생등록

핵심과제5 :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권리 강화

핵심과제6 :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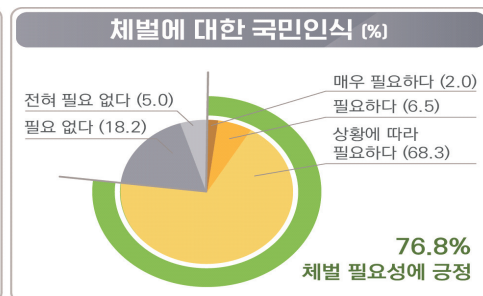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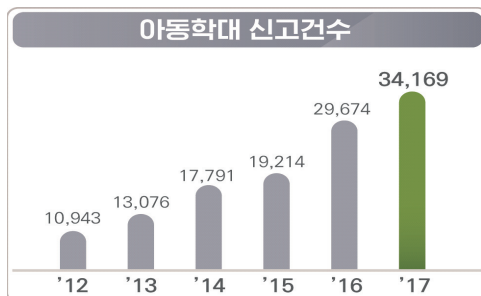
- (등록될 권리) 부모에 의존하는 출생신고 체계(시스템)로 인해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10남매 중 4남매를 길게는 18년간 출생신고하지 않은 사건 ('16년, 광주), 출생신고하지 않은 신생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 ('17년, 부산) 등

- 위기 임신 상황에서 산모가 겪는 심리·정서·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워 베이비박스 등으로 유기되는 아들도 '17년 261명으로 집계된다.

- (체벌) 아동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강화되고 있으나, 가정 내 체벌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한 편이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체벌이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를 권고 ('11.)



- (참여) 그동안 아동은 본인의 이해를 직접 주장하기 어려운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져 온 경향이 있다.

- 아동 관련 정책·의사결정 과정 내에 아동의 입장에서 의견을 청취·반영하는 절차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F7 (핵심과제 4) 누락 없는 출생 등록

□ **[출생통보제 도입]**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 출생통보제가 도입이 되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기대된다.

□ **[보호출산제 도입 병행]** 의료기관 기반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자칫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출산제*가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모(母)가 일정한 상담 등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후 출생등록

F8 (핵심과제 5)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정부는 우선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아동권리보장원-아동인권단체”가 함께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한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 이혼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민법상 징계권 조항 개정]** 이와 더불어,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960년 제정민법 이후 유지)

【징계권 관련 국내외 현황】

- 스웨덴 등 전세계 54개국이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 일본은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추후 징계권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 ('19.3월)
-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촉구 ('11)

F9 (핵심과제 6)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결정]** 정부는 아동의 의견을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간다.

- 아동들이 운영하는 아동총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매년 아동 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 보고하고, 논의된 결과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19.8월 아동총회부터 적용)

* '04년부터 아동 참여권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보건복지부 주최, 아동 단체 주관) 매년 개최 중 ('19년 현재 제16회)

□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을 활용해 유엔(UN) 아동권리협약 상의 ‘아동의 참여’가 지역사회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간다.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아동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는 2019년 시범운영하고,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권] 핵심과제7 :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핵심과제8 : 예방부터 치료지원까지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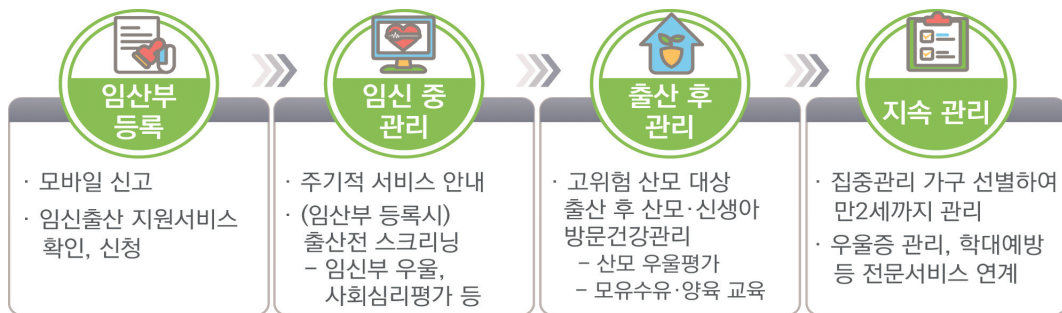
□ **현황 및 추진배경**

- 우리나라 아동의 비만율이나 건강상태는 외국에 비해 나쁘지 않지만,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드는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 * 우리나라 아동 중 1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30분 이상)을 하는 아동은 36.9%에 불과 ('18.아동실태조사)
- 과중한 학업 부담,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 부족 등으로 마음건강 또한 위험한 수준이다.
 - *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40.4%, 우울감 경험률 27.1% ('18.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 * 자살 생각을 하는 청소년 17.6%, 실제로 자살 행동을 한 경우 1.7%, 자살 의도는 없지만 자해 행동을 한 경우 5.8% ('18년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실태조사)
- 정부는 아동의 신체 건강과 마음 건강을 위해 조기에 개입하여 돌보고, 발달 단계에 맞는 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F10 (핵심과제 7)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 생애초기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하고, 언어·학습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검진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①아동 치과주치의, ②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 관리사업, ③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등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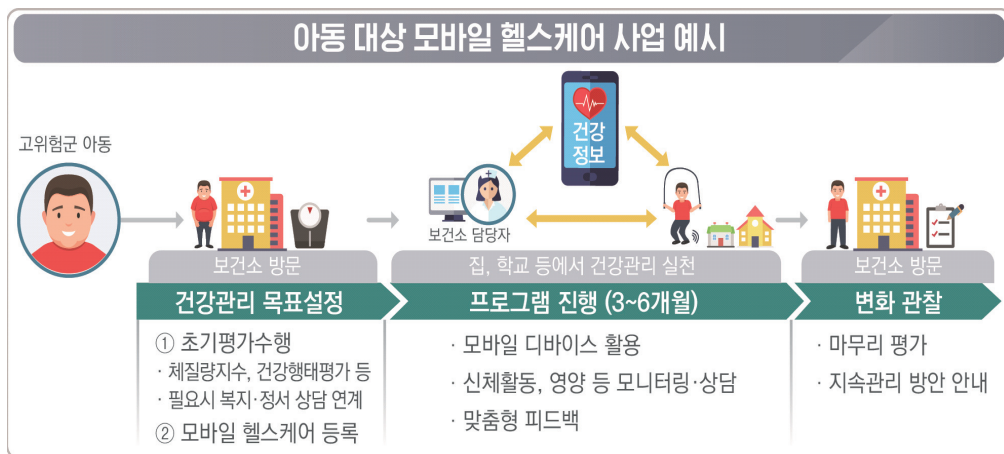
- **[모바일 기반 임신부 지원]** 앞으로 임신부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등록(신청)할 수 있다.
(‘20. 시스템 구축)
- 보건소에서 문자 알림 등으로 임신 주기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안내하고, 임신부는 시기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가정으로 찾아가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고위험 임신부는 출산 전후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된다.
-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가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산모와 아동의 건강 관리 뿐만 아니라 양육 정보도 제공한다.
- 본 서비스는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속 실시하여 생애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건강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신생아기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고,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검진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 유아기(4~6세)에 난청검사(순음청력검사), 안과검사(굴절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등)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언어·학습 장애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 건강검진 검사항목 도입 의과학적 타당성 연구용역,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 등 (~'20)

- **[아동 치과주치의제도 도입]** 평생 건강한 자연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
 - 내년부터 시범사업 실시한 후 전국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도입]** 보건소에서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비만 등 건강 위험 아동을 상담·관리하게 된다.
 - 아동의 운동량, 영양섭취 상태 등에 대해 검사·관리(모니터링)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내년부터 2년간 대상별·지역별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성 여부에 따라 전체 보건소 확대를 검토한다.



- **[만성질환 집중관리]** 질환 발생률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 천식 등 만성질환이 있는 아동이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F11 (핵심과제 8) 예방부터 치료지원까지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 **[역량 함양]** 아동이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마음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관련 교과 수업에서 ‘회복 탄력성 키우기’, ‘건강한 마음가꾸기’ 등이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유학기 실천사례 연구대회, 수업콘서트 등을 통해 관련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학령기 마음건강 관리 강화]** 마음건강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정확도 제고를 위해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항목을 보완하고, 치료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부·교육부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상담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 학생 수 101명 이상 공립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현재 30.2%(’18년)에서 50%(’22년) 이상으로 확대
 -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마음건강 위기 아동은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 등으로의 연계하여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고위험군 관리]** 국립병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학대받은 아동이 긴급 심리평가를 통해 바로 전문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학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 또한, 자살학생 심리부검 자료기반(DB) 구축, 경찰청 수사기록 활용 등을 통해 자살 위기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놀이권] 핵심과제 9 :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핵심과제 10 :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 **현황 및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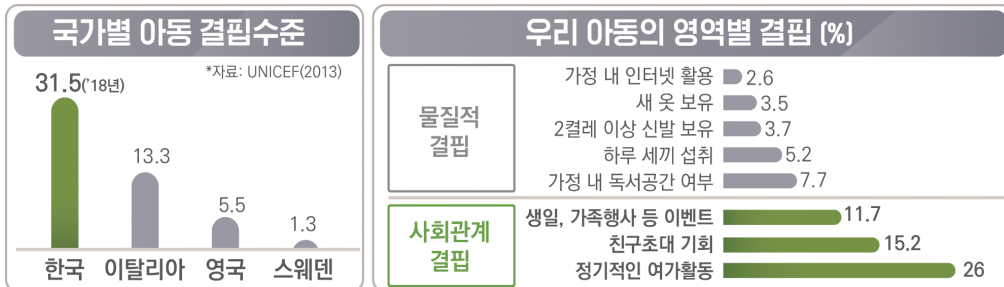
- 우리나라 아동들은 성장 및 발달, 사회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신체활동 시간,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할 기회 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 우리나라 아동은 학업성취도*가 높고, 물질적 결핍(인터넷, 식사·의류, 공간 등)은 낮은 수준이지만, 관계적 결핍(여가활동, 친구, 가족과의 행사 등)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OECD 35개국 학업성취도 비교 시 15세 아동의 문해점수는 최상위 수준

【2018년 아동실태조사】

- ① 1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30분 이상)을 하는 아동은 36.9% 수준
- ② 청소년기 친구의 수도 5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 (7.8 → 5.4명)
- ③ 물질적 결핍수준은 낮은 수준이나 관계적 결핍은 높은 수준



- 이는 적절한 휴식과 놀이가 부족해 나타나는 것으로, 아동의 인지·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창의성과 사회성 등 역량 발달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 정부는 아동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부모, 친구, 이웃과 함께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F12 (핵심과제 9)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 **[추진체계]** 정부는 놀이를 통해 아동이 창의성·사회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역사회 놀이혁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 놀이란 목적 없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에너지 발산을 동반하는 적극적 참여 행위로,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 창의성 등 아동 발달에 필수적

○ 먼저, 올해 하반기에 놀이정책을 수립하고 확산해 나가기 위해 학부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놀이혁신 위원회」를 설치한다.

- 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자체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혁신 행동지침」을 수립한다.

- 각 지자체는 행동지침에 의거, 내년부터는 지역여건에 맞는 ‘놀이혁신 행동계획’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다.

○ 또한, 아동발달에 있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지역 놀이정책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

- 부모 및 일반인 대상 사회관계망(SNS) 홍보, 교사대상 직무교육 강화 등도 추진해 놀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 **[놀이혁신 선도지역]** 내년부터 지역여건에 맞는 놀이사업을 개발하고, 아동놀이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놀이혁신 선도지역’을 선정한다. (20년 20개 지역)

○ 선도지역은 지자체가 놀이에 필요한 협력체계(거버넌스)·프로그램·인력·공간 등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 선도지역에는 돌봄·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도시재생 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 아동관련 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등을 통한 유인체계(인센티브)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 현재 일부 지역사회 중심으로 혁신놀이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은 부족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 이번 정책이 아동 발달에 있어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가 다 함께 아동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 놀이터 사례 ① : 반짝 수영장, 반짝 놀이터】

- (반짝 놀이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빈 공터 등 생활터 주변 공공장소에 종이 상자, 페타이어, 깡통, 밧줄 등이 있는 비정형적 놀이터를 정기적으로 설치·운영
- (벼룩시장) 아동들이 직접 장난감·동화책 등의 벼룩시장을 열고, 거리 공연 등 개최



【혁신놀이터 사례 ② :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 아동은 놀이터에서 '건강한 위험(healthy risk)'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아동, 놀이터 전문가, 공무원, 주민이 함께 설계(흔들다리, 개울, 언덕과 골짜기 등)하고 초등학생 50여명이 직접 감리 ('19. 4호 → '22. 10호)



10 (핵심과제 10)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 **[시간]**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역량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 누리과정을 ‘놀이 중심’ 과정으로 개편하고,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아동이 또래와 상호작용하여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블록수업* 등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 40분씩 진행하는 두 번의 수업을 하나로 합쳐서 진행(80분)하고, 쉬는 시간을 모아서 30분의 중간 놀이시간 확보

- 놀이시간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2022년까지 개발한다.

[놀이혁신 시범학교 : 강원도 놀이밥 공감학교]

- 학교별 여건에 따라 1교시 시작 전과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늘리거나 짬을 내 하루 40~100분의 놀이시간을 확보하도록 공간혁신, 놀이 교구 및 프로그램, 인력 등 지원



- **[공간]** 교실을 비롯한 학교 내 공간을 아동이 쉽게 활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로 바꾸기 위해 향후 5년간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교실을 모둠 활동 등이 쉬운 아동 친화 공간으로 바꾸고, 복도·현관 등 교내 자투리 공간을 실내 놀이실로, 운동장·체육관 등을 구역(블록)형 놀이공간으로 변화시킨다.

【학교 공간 개선 사례】

- 서울 면동초 : 복도공간을 놀이실로 꾸며 놀이공간 확보 (2017년 꿈담사업)
- 경기 시흥초 : 운동장 관람석을 놀이공간으로 재편 (2016년 세이브더칠드런 협업)



- **[프로그램]** 놀이연계 수업을 확산*하여 다양한 놀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 놀이·활동 중심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청별 교육과정 상담·조언(컨설팅) 운영 중

- 마을 단위의 학교 스포츠 동아리(클럽)을 지원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9년 신설. 12개 시도교육청 시범사업 운영)
-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국악·연극 등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도 확대한다.

- 정부는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박능후 장관은 이 날 오후 “포용국가 아동정책 현장 발표회” 행사에 참석하여 아동권리옹호 활동을 하는 아동들과 함께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이번 정책을 소개하고, 아동정책에 대한 아동들의 기대가 담긴 뮤지컬도 관람하였다.
- 현장발표회는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 랜드마크인 문화비축기지(서울시 마포구 소재)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되었다.

- < 참고 >
1. 그간의 아동정책 성과 (2017.5월 ~)
 2. 아동 행복 대한민국 비전 및 전략과 과제
 3. 달라지는 아동의 삶
 4. 2018년 아동실태조사 주요 결과

- < 별첨 >
1. 포용국가 아동정책
 2. 인포그래픽

참고 1 그간의 아동정책 성과 (2017.5월~)

□ 아동수당, 의료비 경감 등 보편적 지원 강화

- (아동수당 도입) '18.9월 아동수당 도입(225.4만명 지급 / '18.12월 기준)에 이어 '19년 보편지급으로 확대* 가계 양육비 부담 경감 기여**

* 소득·재산 등 선별기준 삭제('19.4월~), 만6세 → 만7세 미만으로 대상 연령 확대('19.9월~)

** 아동 1인당 평균 양육비용은 64.8만원('15 전국 출산력 조사, 보사연)

- (의료비 완화)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비급여(신생아 난청 검사 등)의 급여화('17~'18) 등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21~42% → 5~20%, '19.1월)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완화 (10~20% → 5%, '17.10월)

- (예방접종 확대) 어린이집·유치원생, 초등학교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확대 ('18.9월)

- (임신·출산 지원 강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확대 (5종→11종, 1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9개소)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기준) 기준중위소득 80%(8만명) → ('19) 100%(11.7만명)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10만원 인상 및 1세 미만 아동 진료비로도 사용범위 확대 ('19)

□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개선

- (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하고, 공공보육 및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조기달성 목표 수립 (당초 '22년→ 변경 '21년)

* '18년 국공립 어린이집 574개소, 국공립 유치원 501개 학급 신규 설치

* 공공보육 이용률 : 28.5%('19.4. 현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 28.0%('19.4. 잠정)

-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대 배치('18. 6천명↑), 보육료 단가 인상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

* '19년 말까지 보조교사(4만 명), 대체교사(2만 7000명) 확대 배치 계획

- (초등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마련('18.4)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돌봄체계 구축 추진

* 약 389천명 온종일 돌봄 이용 중('19.3) : 초등 돌봄(290천명), 다함께돌봄(745명), 지역아동센터(99천명)

□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노력 강화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운영('18.3월),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 학교출결·병원진료 등 각종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아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읍면동에서 방문·확인 후 서비스 연계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통해 '18년 55,363명의 위기아동 예측하여 총 2,333명에게 서비스 연계

- 아동보호전문기관(60→63개), 학대피해아동쉼터(57→68개) 확충하고, 인력 증원 (1,236→1,360명)

- 아동권리보장원 설립('19.7월 예정)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18)

- '19.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제공

〈수치로 본 아동정책 성과〉

	2016	2017	2018	2019
임신·출산, 영유아 건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자 수				
	82,313명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79,515명	97,905명	116,959명 (‘19년 예산 기준)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확대				
	3종 질환 대상 의료비 지원	50만원 초과분 대상 지원 규정 삭제	2종 질환 추가	6종 질환 추가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완화				
		10~20% → 5% (10월~)		
▪ 1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완화				
				1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 21~42% → 5~20% (1월~)
▪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				
	12개월 미만까지 (도입)	59개월 이하까지 확대	12세까지 확대	임산부까지 확대
▪ 임신·출산 진료비(건강보험) 지원				
	분만취약지거주자 추가지원 30일 이상 거주자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지원금 확대 70만원→90만원		지원금 10만원 인상 △ 단태아 50만원→60만원 △ 다태아 90만원→100만원 지원금 사용기간연장 분만예정일·출산일 로부터 60일→1년

	2016	2017	2018	2019
보육 및 돌봄				
▪ 아동수당 지원				
			225.4만명 지원 (‘18.12월말 실적 / 누적치)	약 270만명 지원 (‘19년 예산 기준)
▪ 공공보육 이용률				
	22.5%	23.6%	25.2%	28.5%(‘19.4월)
▪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24.2%	24.8%	25.5%	28.0%(‘19.4월)
▪ 드림스타트 이용자 수				
	135천명	144천명	150천명	155천명(예상)
▪ 온종일돌봄 이용자 수				
			362천명	400천명(예상)
요보호아동 지원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통한 위기아동 발굴				
			△ 대상 55,364명 △ 서비스연계 2,333명 △ 학대판단 29명	(‘19.5월 실적 기준) △ 대상 47,182명 △ 서비스연계 942명 △ 학대신고 11명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59개소/53개소	60개소/57개소	62개소/65개소	68개소/73개소(12월)
▪ 자립수당 (월 30만원) 수급 대상				
				4,920명 (‘19년 예산 기준)

참고 2

포용국가 아동정책 비전 및 전략과 과제

비전

아동이 행복한 나라

전략 · 주요 추진 과제

F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

- F4-1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혁신
- F4-2 보호대상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을 혁신
- F4-3 아동학대 대응체계 혁신 및 가족 회복 지원 강화
- F4-4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최대한 가정형 보호
- F4-5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 F4-6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2 아동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 F5-1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권리 강화
- F5-2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 F5-3 믿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3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

- F6-1 건강한 신체를 위한 예방-조기발견-사후관리 강화
- F6-2 마음건강 예방 및 관리 강화
- F6-3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건강 취약 아동

F7 창의성 ·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

- F7-1 지역사회 놀이혁신 추진전략
- F7-2 지역사회 주도의 놀이혁신 확산
- F7-3 다양한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확산
- F7-4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참고 3

달라지는 아동의 삶

분야	현재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 부모가 가장 먼저 상담받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아동의 삶이 결정 ▪ 대규모 시설 위주의 보호 ▪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 보호결정은 지자체가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하여 직접 수행하도록 전문요원 배치 ▪ 학대조사를 공무원 직접 수행 ▪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 가급적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 ▪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및 양육보조금 인상 등 ▪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 부양의무자조사 면제 ▪ 시설·그룹홈·위탁가정에 머무르는 시기부터 자립준비 ▪ 자립후에는 경제적 지원, 주거·취업 지원 강화
아동권리 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 아동을 양육과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 ▪ 초등 돌봄 사각지대 존재	▪ 누락없는 출생등록, 체벌금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지역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생애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건강	▪ 임산부가 알아서 보건소에 찾아가서 서비스 신청 ▪ 학교검진 따로 치료 따로 ▪ 건강 취약아동에 대한 돌봄은 부모와 아동 개인의 부담 ▪ 마음건강 지원 미흡	▪ 모바일로 임산부 등록하면, 국가가 서비스 안내 ▪ 아동이 태어나기 전후 방문해서 건강체크 ▪ 난청·안과 등 영유아 건강검진 개선 ▪ 학교검진과 연계하여 보건소 아동 모바일헬스케어 지원 ▪ 아동치과주치의, 아동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 지역 아동건강지원 확대 ▪ 주기적인 마음건강 모니터링 및 상담교사 확충
창의성·사회성 개발을 위한 놀이혁신	▪ 친구, 가족과 함께 놀 시간·공간 부족	▪ 생활SOC, 도시재생 등과 연계 ‘놀이혁신선도지역’ 지정·확산 ▪ 초등학교 중간놀이시간 활성화 및 공간개선 투자

참고 4

2018년 아동실태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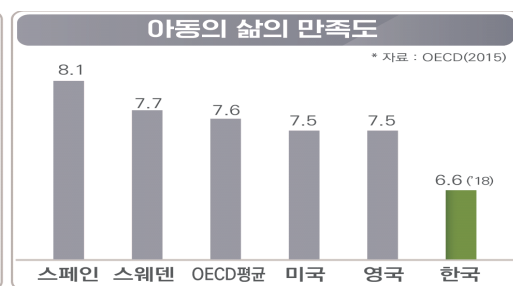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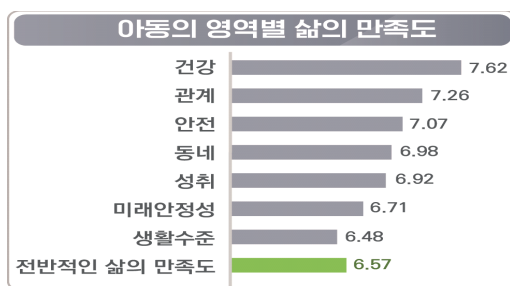
1. 조사 개요

- (목적)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토대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아동정책 수립
- (조사영역 및 조사방법)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 환경, 물질적 환경, 주관적 웰빙(9개 영역) 조사 ※ 전국 만18세 미만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면접조사

2. 주요 결과

① 아동 삶의 만족도

-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2013년 대비 소폭 상승 ('13년 6.10점→'18년 6.57점)
 - (가구별) 소득이 낮을수록, 한부모·조손가정일수록 만족도 감소
 - (영역별) '건강' 및 '관계' 만족도 높으나 '생활수준' 및 '미래안정성' 만족도는 상대적 저조
- 2013년에 비해 상승하였음에도, OECD 평균 점수(7.6점) 보다 낮으며 (6.57점), OECD 27개국 중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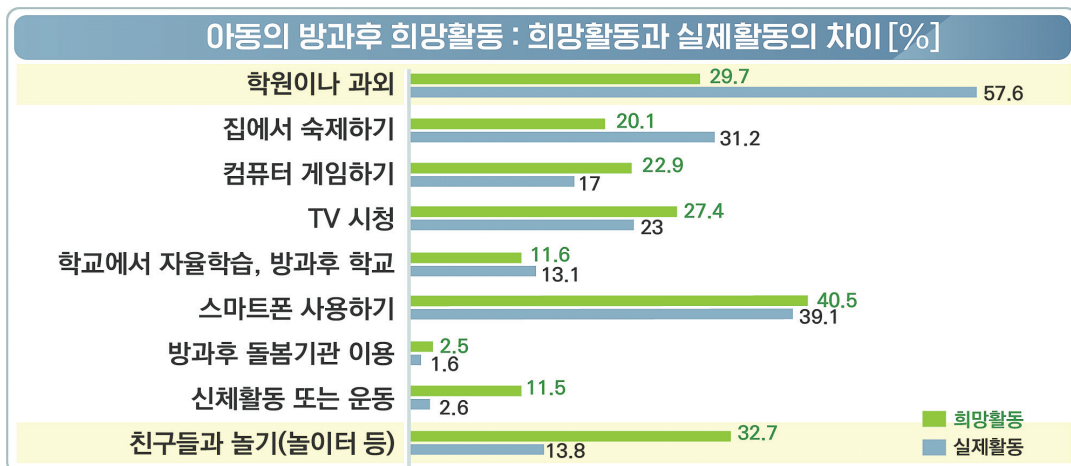
1) (국제비교 활용 데이터) HBSC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아동의 건강행동 설문조사, WHO] 2010년 보고서의 '아동 삶의 만족도 데이터' 중, OECD 국가들만 선택하여 비교분석한 OECD의 'How's Life'(2015) 자료 기반
 (측정 대상) 국제비교를 위해 OECD 기준에 맞춰 11,13,15세 아동만을 대상
 (측정 방법) OECD, 국내 모두 '캐트릴의 사다리'에 기초하여 질문하였으며, '전혀 만족하지 않음'(0점)~'매우 만족함'(10점)으로 응답

② 아동의 마음건강

- 아동의 우울 및 불안, 공격성²⁾은 2013년 대비 뚜렷하게 증가
 - * 우울 및 불안 '13년 1.27점→'18년 1.88점 / 공격성 '13년 1.25점→'18년 1.96점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전체 아동의 약 33.7%
 - * 고위험 5.8%, 잠재적위험 27.9%

③ 아동의 놀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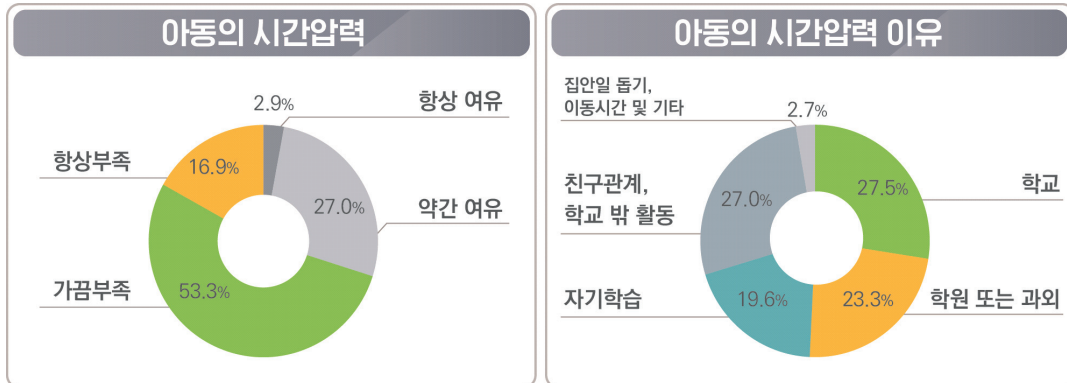
- 아동들은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에 여전히 목말라하며, 방과 후 놀권리 보장은 과거보다 악화됨
 - 희망보다 실재가 가장 저조한 분야(희망>실재)는 '친구와 놀기', '신체활동 및 운동하기' 순으로 나타나 놀이시간 턱없이 부족
 - * 반면 희망보다 실재가 가장 높은 분야는 학원이나 과외
 - “실제로 친구와 놀고 있다”는 응답률 감소 ('13년 21.7%→'18년 13.8%)



2) 2013년 실태조사는 1문항이 빠진 18문항으로 조사되었으며, 2018년 실태조사는 원칙도 19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여 1문항의 척도 차이가 존재. 단, 척도 수정으로 인한 차이는 미세 (2018년 조사를 18문항으로 측정 시 1.90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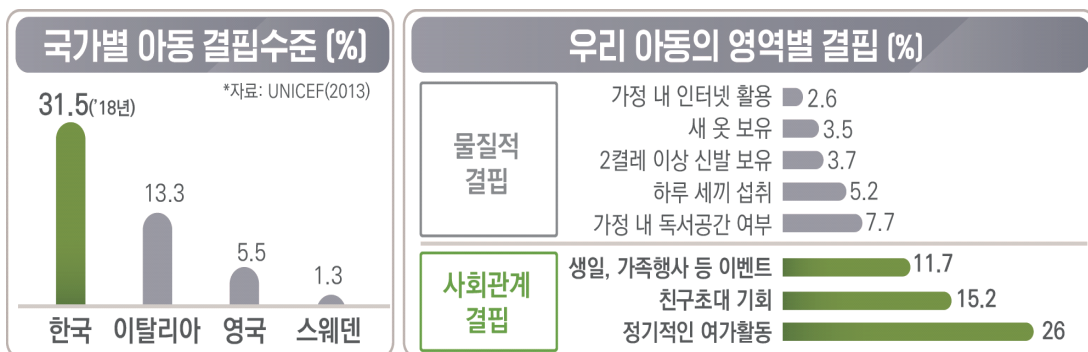
4 아동의 시간 압력

- 아동의 70% 이상은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
 - 학원 또는 과외 등 학습관련 시간부족이 전체 응답의 75% 차지, 청소년기 연령일수록 시간부족 응답 비율 상승



5 아동의 결핍

- 아동의 결핍 수준은 2013년 대비 큰 폭 감소 ('13년 54.8%→'18년 31.5%)
- 국제비교 시, OECD 및 EU국가 29개국과 비교할 때, 아동결핍이 가장 높은 헝가리(31.9%) 다음으로 상위 두번째³⁾



3) (국제비교 활용 데이터) 'Measuring Child Poverty' (UNICEF office of research(2012) 자료 기반
 (측정 대상) 국제비교를 위해 UNICEF 조사 기준에 맞춰 1~16세 아동을 대상
 (측정 방법) 국제, 국내 모두 14개 결핍 항목 중 2개 이상 결핍 아동의 비율로 측정

토론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정책과제

김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김도현 국제아동인권센터/CHILDVOICE, 고등학교 1학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정책과제」 토론문

김 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과연 성장세대에게 권리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권리가 얼마만큼 보장되고 있는가? 또 그런 권리를 우리사회는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아마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오늘의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는 인권의 사각지대인냥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언론보도 상에서 하루가 멀다고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들, 청소년 참여에 대한 미묘한 논쟁들(예컨대 청소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에 대한 논의들)이 이를 방증하는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여전히 그리고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사회로 제시되고 있고, 실제로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발제자분들의 글에도 우리가 향후 풀어야 할 과제와 문제점들을 잘 요약하고 있고 쟁점화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현실일 것이다.

토론자는 발제자의 글에 덧붙여 아동권리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차별금지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풀어갈 생각이다. 발제자분들의 글을 통해 새롭게 안 사실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풀어야 할 과제가 있음도 잘 알게 되었다. 두 분 발제자께 지적 지평을 열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토론자는 두 분의 글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견지하되,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현황들, 그리고 개선해야 과제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끌어가고자 한다. 참고로 이 글은 지난해 11월22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아동인권보고대회에서 토론자가 작성한 글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 아동청소년권리의 차별금지 현황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CRC; 이하 협약)에서는 차별금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2조 차별금지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차별금지에 대한 제한된 인식과 태도

협약에서 규정하는 차별금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협약 이행을 위해 협약 비준국가들이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이다(UNICEF, 2007; 황옥경·안동현·이호균·강현아·홍관표·현소혜·정선영, 2015). 여기서 차별금지란 ‘연령’에 따른 차별금지는 물론, 아동과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갖고 있는 모든 조건에 관계없이 아동이 모든 차별의 조건으로부터 벗어나 그 자체로 천부적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이자, 이 협약이 인정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받는 존재임을 천명하는 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연령주의에 따른 차별까지 더한, 성인과 비교해 ‘차별받기 쉬운 존재’이다. 특히 유교적 전통과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뿌리 깊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 갖는 차별은 유독 심하다.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과 편견을 갖는 연령주의(ageism) 관점, 혹은 어른의 관점에서 보려는 성인중심주의(adult-centrism) 관점에서 아동은 어른의 축소판이나 소유물로 바라보기 쉽기 때문이다. 연령주의와 성인중심주의의 부정적인 결과는 아동과의 잘못된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아동의 의지와 동기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 아동의 자기결정성을 제한하는 힘의 오용, 아동의 힘과 능력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손상을 불러온다.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려면 “태도변화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입법과 행정, 그리고 자원분배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2003, para 12; 황옥경 외, 2015: 28-29).

인간이 갖는 기본권, 즉 인권은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당연히 부여된 권리이지만, 이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상호존중이 없이는 권리주체자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기도, 또 타인의 권리를 옹호하기도 어렵다. 즉, 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와 인권의식이 전제하지 않는다면,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위한 어떤 행동도 취하기 어렵다(김진석, 2017). 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에 기초함으로써 인권에 관한 감수성과 인권의식은 물론 실천적인 태도까지 함양하려 한다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아동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우선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권의식은 사회구성원들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옹호하는 태도(김자영, 2011)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의 시민참여와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의 전제조건이 된다(정상우, 2013). 따라서 아동의 인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자체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의식과 태도는 아동의 행복과도 직결된다.

2) 헌법상의 차별금지 관련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조항은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거나 구시대적 관점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 관한 전문개정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청와대, 2018.3.22.). 이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9조를 다문화·다민족 시대를 맞아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창달 노력의 의무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되어 온 민족문화의 창달 대신에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증진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전통문화는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¹⁾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기존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을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2장의 제목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 바꾸고 이장의 각 조항에서 ‘국민’이란 주체를 각각 ‘사람’으로 바꾸는 안을 발의한 바 있다.²⁾ 특히 국민에서 사람으로 권리의 주체를 확대하였다는 점과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에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추가하는 등 평등권을 강화한 것은 헌법상의 차별금지를 확대·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차별금지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강화하고자 한 점은 포괄적으로 아동의 차별금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간 헌법에서 아동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논의(김선택, 2010; 황옥경, 2011)와 관련하여 여전히 아동이란 주체가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동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특히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헌법 제34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

1) 당초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개정안은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2) 예컨대 기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였고,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하였고 평등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11조 제1항에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에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추가한 바 있다.

다.”란 조항에서, 대상에 아동 혹은 어린이가 추가되거나 청소년이란 용어 대신에 아동을 삽입해야 한다는 개정논의(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 <http://n-opinion.kr>)가 아동과 청소년 관계자들 간의 대립으로 인해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된 것은 토론자로서 아쉬움을 갖게 한다. 아동과 청소년이란 용어를 중심으로 헌법상 지위의 원칙규정이란 차원에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은 물론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주체, 개별적 인격체로서 권리의무의 평등한 주체를 치열하게 따짐으로써 아동(학)계와 청소년(학)계에 서로 긍정적이고 상승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사이트에서 제시된 외국의 입법례에 따르면 스위스(제11조 (1) 어린이 및 청소년은 특별히 온전하게 보호받고 그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폴란드(헌법 제72조 (1) 폴란드 공화국은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은 어린이에 대한 폭력, 학대, 착취,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것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헌법 제27조 (3) 아동을 혹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병기하거나 혹은 어린이, 아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 등의 국제적 기준에 따라 아동이란 범주에 일부 청소년의 연령대를 포함시켜 아동이란 이름으로 명명할 것인지 아니면, 아동과는 다른 청소년기의 인간발달단계(최윤진, 1998)를 인정하여 함께 병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아동학계와 청소년학계 모두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3) 차별금지법 제정 무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으나 주로 성적 지향과 관련된 인식 부족과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우려하는 일부 종교 및 보수단체의 반발로 인해 법 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 이후 법무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성소수자 반대 보수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제정하지 못하였다. 법무부는 이후 2007년(17대 국회)과 2010년(18대 국회)에도 성별, 장애, 인종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안 중 성적 지향, 즉 동성애자 여부가 교육 등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한 보수단체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고, 차별금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추진이 중단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의 이유로 자동 폐기되었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에게 차별금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법체계 구축을 위해 차별금지법안과 같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상 차별 사유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김경준·이호균·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 2014). 이어 2012년에 수

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이 포함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정부 역시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대해 수용 의견을 밝혔고, 2013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101번 ‘사회통합적 인권보호체계 구축’과제 중 두 번째 추진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제시하였다(김영지·김희진, 2017).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성적 지향’과 같은 특정사유를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 반대 여론이 있고,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성도덕의 타락이나 AIDS 감염 확산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등의 사회갈등이 여전하였다. 이로 인해 제19대 국회(2012.5.30.~2016.5.29.)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보수 종교단체가 차별금지 사유로써 성적 지향을 규정한 것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여,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입법을 철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2015). 지금까지도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이의 이행을 위해 차별금지법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중앙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인권조례는 물론이고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이 진행되어졌다. 2012년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0년 경기도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계기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는 지역사회와 학교에서의 아동의 모든 형태의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행정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의 조례제정도 국가수준의 차별금지법과 같이 제정 과정이나 제정 이후에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제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제정된 법안이 철회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다. 일례로 충청남도의 경우, 지난 2012년 도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제정된 인권조례가 그간 인권규범과 제도, 정책을 확대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보수종교단체의 지속적인 반발 등의 논쟁을 거듭하다 2018년 2월2일 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후 동년 5월10일 폐지·공포된 바 있다.

2. 개선과제

1) 차별금지 인식과 태도의 확대

발제자2의 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차별금지 인식과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제1차 아

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아동보호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보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아동차별을 예방·억제·철폐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빈곤과 장애, 범죄, 가출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과 유관기관 종사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권리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권리교육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다.

차별금지 인식과 태도의 확대는 관련법령 특히 차별금지법안의 제정과도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사회의 아동차별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그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아동차별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동권리 및 차별 금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전략 및 실천을 중시하는 것은 차별금지 인식과 태도의 전환과 확대 등과 관련해 의미 있는 사례이자 실천으로 보인다.

2) 헌법 및 관련법령의 정비와 제정

제반 법령의 상위법인 헌법에서부터 인간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헌법적 가치의 강화는 아동 차별금지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가치와 의식,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주제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헌법조문에 아동·청소년이란 대상을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는 헌법상 법적 지위의 획득이란 점과 함께 그간 아동, 청소년, 청년 등 하위법률 상 연령별 대상의 모호성을 법적으로 확증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우선 모든 유형의 아동차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모든 국민이 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확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아동 스스로가 권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상반되는 단체들의 요구에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앞서 논의한 실태조사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토론 등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경준·이호균·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연구 IV: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선택(2010). 아동권리의 헌법적 수용. 헌법의 아동 수용 추진을 위한 공청회(2010.4.19.). 헌법의 아동수용 추진위원회. 17-57.
- 김자영(2011). 청소년 인권의식의 형성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6(2), 57-83.
- 김진석(2017).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심화분석 보고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2015).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결과 보고서. 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2003, CRC/GC/2003/5, para.12.
- 정상우(2013). 인천지역 중고등학생의 청소년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법과 인권교육연구*, 6(1), 147-169.
- 청와대(2018.3.22.) 대통령 발의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청와대.
- 최윤진(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양서원.
- 황옥경(2011). 차별에 대한 아동의 인식. *아동과 권리*, 15(3), 501-523.
- 황옥경·안동현·이호균·강현아·홍관표·현소혜·정선영(2015). 아동·청소년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UNICEF(2007).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ren*(Fully revised 3rd edition). Geneva: UNICEF.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정책과제」 토론문

김 은 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2019년 5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담고 있습니다.¹⁾ 이번 정책에서 4대 분야 중 하나로 설정된 ‘인권·참여권’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분야였음을 생각할 때, 아동 인권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권·참여권’은 정부 최초로 민법 제 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용어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가정 내 체벌금지를 위해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책문서에 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민법을 개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민간단체에서는 정부 발표 이후 즉각 민법 개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는가 하면,²⁾ 언론에서는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가정 내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징계권’은 1958년 민법 제정 당시부터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그 당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아동의 인권 보장이 국가의 책무로 인식되는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여기서는 ‘핵심과제 5.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권리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에서 체벌을 허용할 때 생기는 문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1) 포용국가 아동정책 보도자료(5.23. 관계부처 합동) 2쪽,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세이브더칠드런 성명(2019.5.24.), ‘민법 개정을 통해 가정 내 자녀 체벌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정책을 환영한다’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 민법 징계권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혹은 가르친다는 이유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에는 체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 대한민국은 현행법에서 합법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자녀를 체벌하는 모든 양육자들이 민법의 징계권을 알기 때문에 체벌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 자녀를 폭행해서 기소된 부모들은 징계권을 근거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합니다. 4) 징계권이 현재 조항으로 존재하는 한, 자녀에 대한 체벌은 소위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부모가 할 수 있는 정당행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인식에 균열을 가져오려면 법과 같은 제도를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새로운 사회 상규로 인식되기까지, 실제로 폭력이 줄어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법적 조치도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 체벌을 받아들이는 인식, 사회 상규에 균열이 생기길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으로 인식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더 이상 사회 상규나 정당행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법으로 체벌을 금지할 때의 효과

법과 규정은 인식과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1979년 세계 최초로 자녀에 대한 체벌금지를 법에 명시한 스웨덴은 복지국가라 자연스럽게 법제화를 이룬 것일까요? 스웨덴도 100년 전에는 노예체벌은 할 수는 없어도 자녀체벌은 가능했던 나라였습니다. 1970년대에 있었던 아동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온전한 한 명의 인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인 체벌부터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 끝에 체벌을 금지하는 법개정을 하게 됩니다. 스웨덴 체벌 사용에 대한 조사를 보면 1960년대에는 95%에 달하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했습니다. 1970년대에 50%로 급격히 줄었고, 1980년대에 35%, 1990년대에 20%, 그리고 2010년대에 와서 10%대로 감소합니다. 5)

3) 징계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징계를 “친권자가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녀의 정신 또는 신체에 대해 고통을 가하는 제재(주해친족법 제2권, 박영사(2019), 1050쪽)”라고 해석하는 경우 체벌은 징계권 행사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4) ‘부모 체벌 방패막’ 자녀 징계권...그간 법원 판단은? (뉴스시스, 2019.5.2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24_0000661353&cID=10201&pID=10200

5) Never Violence - Thirty-Five Years on from Sweden's Abolition of Corporal Punishment (2014),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Sweden & Save the Children Sweden.

국내에서도 흥미로운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연구에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벌경험 실태의 연도별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⁶⁾ 2011년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체벌경험 수준이 비슷했지만, 2018년 시점에서 비교해보면 두 공간에서의 체벌 경험 격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가정 내 체벌 경험(‘한번도 없음’을 제외한 비율)은 2011년 39.3%, 2013년 30.6%, 2014년 25.7%로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26%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학교 내 체벌 경험은 2011년 38.4%, 2013년 29.7%, 2014년 23.7%, 2015년 15.5% 매년 감소하여 2018년에는 12.2%로 낮아졌고, 특히 중학교 내 체벌경험만 놓고 보면 2011년 48.8%에서 2018년 15.4%로 낮아져 학교 내 체벌이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학교 각 공간에서 체벌 감소 격차가 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도구나 신체를 활용하지 않는 체벌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학교 내에서의 체벌 금지의 법적 근거가 되어 실제로 체벌을 줄이는 데 기여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 외에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이 시행령을 보완하며 일선 학교에 체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합니다.

민법 개정과 2020년 아동정책영향평가, 그리고 아동인권의 증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합니다.⁷⁾ 즉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법령·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등에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일련의 법적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민법 징계권 개정을 통해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이미 있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률에 따라 하위 조례나 규칙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인권 보호 증진에 연결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올해에 민법 징계권이 개정된다면, 아동인권 향상에 있어

6)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2018), 229쪽(체벌경험여부 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 받은 경험 전혀 없음을 제외한 비율), 231쪽(체벌경험여부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전혀 없음을 제외한 비율).

7)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된 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그 영토 내에 있는 개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신중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이유로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빛을 바랄 것입니다. 폭력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있어서는 ‘다수의 합의’가 이뤄지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곧 다가올 9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약속한 과제들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정부에서 아동의 인권이 실제로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정책과제」 토론문

김 도 현 국제아동인권센터/CHILDVOICE, 고등학교 1학년

아동으로서 느끼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아동들에 대한 편견이다. 사람들은 아동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시민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충동적이고, 무능력한 존재, 그러니 곧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대우 받기 일쑤다. 그리고 이런 시선은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4대 기본권 중 참여권 보장 수준이 유독 낮은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미성숙한 아동의 의사를 부모나 교사가 대신 대변할 수 있다는 편견 때문에, 우리는 의견을 표명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앞에서 유민상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2018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 보고서를 읽으면서 나의 경험이 그대로 숫자로 나타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실태 조사 결과, 특히 참여권을 중심으로 나와 주변 아동들의 경험들을 들려드리고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의 핵심과제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발표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권과 관련하여 국가가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아동참여기구가 만들어져 왔고, 아동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목적으로 토론회 등 각종 행사도 열린다. 그러나 아동들이 낸 의견이 정책 결정권자에게 직접 전달되는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아동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는 교육청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학생 대토론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나를 비롯해 거기 참가했던 학생들은 장애 아동을 위한 경사로 설치, 공교육 내의 성평등 교육 등 본인의 경험에 기초한, 굉장히 의미 있는 의견들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세 시간 정도의 토론회를 마치고 집에 가면 아무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공허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토론’을 위해 만들어진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동 참여 기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아동들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하고 받아들이는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책임감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아동들의 의견에 기초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보다 온전한 참여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는 아동총회 결과를 매년 아동정책조정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논의 및 정책 반영 결과를 정부가 직접 아동총회에서 설명한다는 점은 무척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성이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기에 다소 우려가 된다. 아동들의 정책 제안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이 제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아동들이 정부의 의지를 신뢰하고 존중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포용국가 아동 정책에 언급된 아동총회 개선만으로 아동 참여가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11.5%로 여전히 낮고, 참여기구 활동 경험률은 2.2%에 불과하다. 아동총회를 비롯한 참여기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동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아동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등의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 참여권 실현을 위해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공교육이 아동이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단체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학업 성적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 보니 대다수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 이외의 것에 시간을 쓸 수가 없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학습 시간은 OECD 국가들의 평균의 최대 두 배일 정도로 길며, 시간 선택의 자유에 대한 만족감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14개국 중 꼴찌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아동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낼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그 시간을 과도한 학업이 채우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현재 두 곳의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매일 밤 11시 넘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 생활 속에서 활동을 위한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물리적인 시간뿐만이 아니다. 입시에 치중된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사회 현실이나 인권 실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는 별로 없다. 이렇듯이, 공교육이 근본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참여권은 단순히 부여한다고 해서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동들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우선 교육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자신의 의사를 공적인 자리에서 표명해 본 경험이 쌓여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는커녕, 인권 교육 자체가 부재한 상태다. 나는 지금까지 사회 교과서에서 단편적으로 다뤄지는 내용 외에 실질적인 인권 교육을 학교에서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물론 장애 이해 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은 있지만, 외부 강사가 일방적

으로 늘어놓는 말들에 집중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그러한 교육들은 오히려 인권을 특수한 것, ‘나와는 관련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소수자성’을 일깨우고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익히게 하는 인권 교육이 절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 정부 문건에서 “아동 스스로 권리의식과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돌봄기관 등을 중심으로 권리교육 강화”라고 언급한 것을 환영한다. 인권 교육은 시민단체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 안에서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어린 나이부터 체계적·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을 받은 후에는 학생들이 직접 인권 옹호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면 좋겠다. 인권교육은 결국 모든 아동이 인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나설 때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학교가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인권친화적인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참여권에 대해 얘기할 때 학교 내에서의 아동 의견 반영도 빼놓을 수 없다. 학생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생 참여가 보장된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작년에 나를 포함한 아동들이 직접 집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자격이 성적에 따라 다르게 주어진다는 점이었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성적을 이유로 임원 출마 자체를 막거나 상위 몇 퍼센트의 학생에 한해 학생회 활동을 허용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학교 안에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참여권조차 성적을 이유로 차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학생회가 교장이나 교사의 지나친 간섭을 받는 것이다. 중학교 때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장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고, 교사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불편하다고 느꼈다. 학생회는 아동들이 주체가 되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하는 학생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칙 제·개정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내 친구의 학교에선 교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멋대로 밟아놓고선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동의 사인을 하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었다고 한다. 이런 형식적인 참여 대신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의견 청취의 장을 만들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도 정식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오직 4개 지역에만 적용되고 이 규정 자체가 강제성이 없으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학교 운영과정에서의 학생 참여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학교장 개개인의 재량으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경기도에 살고 있기에 여타 지역에 비해 학생 참여권 보장 수준이 확연히 높다고 생각하긴 하나, 학생인권조례를 우습게

여기고 때로는 조롱하는 교사들도 있었기에 학생인권조례보다 좀 더 실질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의 참여권은 보호권이나 생존권 등 다른 권리에 비해 가시화되어 있지 않다. 내 경험 상 참여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참여권을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아동인권옹호활동을 해 오면서 참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적으로 깨달았다.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고, 내 의견을 누군가가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것 자체로 긍정적인 경험이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연해졌으면 좋겠다. 작게는 학교와 지역사회, 크게는 정부의 운영 과정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기꺼이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서 짧게 덧붙이고 싶은데, 놀 권리아말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놀 권리이다. 놀이를 권리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서, 놀이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부모 및 교사를 교육한다는 계획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 그리고 초등 저학년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 적절한 여가와 휴식은 어린 연령의 아동뿐 아니라 초, 중, 고등학생 모두에게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 상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여가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며, 아동들이 생각하는 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학구열’이었다.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언급된 스포츠 클럽이라던가, 문화예술교육도 쉽게 교육현장에서 자습으로 대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중고등학교에서는 입시나 시험을 이유로 예체능 수업을 취소하는 일이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보다 정확하게 아동의 욕구와 아동들이 마주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놀 권리 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부 록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교육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Contributors

강가현	강연수	김경욱	김도현	김우정
노묘진	노충현	류조은	박성우	박소민
박승현	박주현	박지영	백혜원	신채희
신혜연	이수중	이준서	임수연	조은경
차누리	천성은	홍세아		



Supporters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교육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

Contents



I. _____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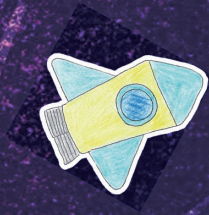
우리는 누구일까요?

1. 활동 소개
2. 집필진 소개
3. 주제 선택 이유
4. 집필 과정 소개

II. _____ 05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1. 건강·휴식·여가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3. 공교육
4. 교육격차
5. 입시제도



Ⅲ. _____ 25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Ⅳ. _____ 29

참고문헌

V. _____ 32

부록

아동보고서 작성을 위한 ‘교육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 관련 설문조사

I. 우리는 누구일까요?

1. 활동 소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활동은 만 10세에서 18세의 아동이 지역별로 참가하여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지원 아래 대한민국 아동 인권의 현주소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참여의 장이다.

이 활동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별로 진행되었다. 2015년 수도권에서는 ‘비차별’, 경상권에서는 ‘비폭력’을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였고, 2016년 충청권에서는 ‘비차별’, 제주권에서는 ‘놀이 권리’를 주제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마지막 2017년에는 전라권과 강원권에서 ‘비차별’을 주제로 활동하였고, 3년간 가장 많은 아동이 원한 세상은 ‘차별 없는 세상’이었다. 또한 2015년 173명, 2016년 129명, 2017년 102명의 아동이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에 참여하였다. 이후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 몇몇 아동들은 1~2년간 후속 활동을 해 나갔다(2016년 1기 29명, 2017년 1기 10명과 2기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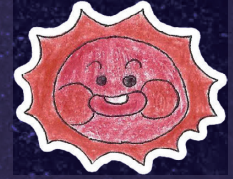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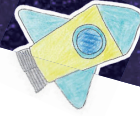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활동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서 활동한 아동 394명^[1]의 의견이 녹아 있다. 아동들은 스스로 정한 주제에 대해 캠페인, 정책 제안,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지역별 발표회를 통해 대한민국 아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여러 사람에게 알렸다.

2. 집필진 소개

아동보고서 집필진(이하 ‘집필진’)은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를 작성하는 아동들이다. 집필진은 1~3년 동안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로 활동한 아동 중 아동보고서 집필을 희망한 아동 23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주제 선택에서부터 활동 계획, 집필 과정까지 모든 결정을 아동이 스스로 주도하였다. 집필진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 놓인 아동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포함하여, 대한민국 아동의 고통과 아동 인권의 실태를 솔직히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1] 5개월 간의 활동을 모두 이수하고 활동증명서를 수령한 아동 기준

I. 우리는 누구일까요?



3. 주제 선택 이유

본 집필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활동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를 비교하여 다양한 아동권리 침해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졌던 주제 중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중심으로 11개의 소주제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대한민국 교육의 전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다루기에는 제한적임을 느꼈다. 이후 ‘교육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이라는 최종 대주제를 선정하고 기존 11개의 소주제를 건강·휴식·여가,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공교육, 교육격차, 입시제도, 총 5개의 소주제로 재구성한 후 추가 조사를 거쳐 집필하였다. 집필진이 위 5개의 소주제를 보고서에 포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건강·휴식·여가

“

‘자살하고 싶다’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의 연간 학습시간은 성인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보다도 더 길다. 아동은 긴 학습시간으로 인해 여가를 즐길 시간뿐 아니라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이나 수면 등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누릴 시간도 부족하다. 더불어 아동이 여가, 휴식 등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 또한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지만, 해소할 환경은 부족하다. 해소되지 못한 스트레스는 심한 경우 우울증, 아동 자살을 초래하기도 한다. 마음껏 놀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현실적으로 건강, 휴식, 여가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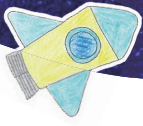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애들은 가서 공부나 해!’

대한민국 아동은 누구나 누려야 할 시민적 권리와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에게는 공부가 우선이며, 집회 참가 및 대자보 부착 등 시민적 권리와 관련된 활동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된다. 또한 학생회와 학급 임원과 같은 교내 간부 활동 시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참여자격을 제한하기도 한다.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간과하고, 아동의 의사표현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성적을 기준으로 아동의 의견을 판단하는 사회적 편견을 지적하고자 한다.

I. 우리는 누구일까요?



3) 공교육

“

‘성적으로 줄 세우는 학교’

대한민국 아동의 90%가 공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현 공교육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예체능과 다양한 통합 교과^[2]보다는 대학 입시를 위한 과목이 더욱 중시되고, 성적을 기준으로 각종 교육 기회를 차별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현재 공교육은 학업 스트레스, 과도한 사교육과 같은 문제를 낳고 있다. 게다가 진로체험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아동 개개인의 고유함을 존중하고 그들의 능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공교육이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4) 교육격차

“

‘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농어촌 지역 아동, 다문화 아동, 미등록 이주아동, 장애아동, 학교 밖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불평등한 교육 기회는 아동이 성장한 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입시제도

“

‘점수에 꿈을 맞춰’

현재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는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펼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학생의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 위주로만 평가하는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발달권(제29조 교육의 목적)을 침해하고 있으며, 학교 밖 아동이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문제이다.

[2] 기존의 교과와 교과 간의 관계를 뛰어넘어 주제나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목적으로 내용이 구성된 교과

I. 우리는 누구일까요?



4. 집필 과정 소개

1) 일정

1월	아동보고서 집필진 1차 워크숍 (1월 23일~1월 26일 / 3박 4일)
2월	설문조사 소그룹 워크숍 (2월 26일)
3-4월	아동보고서 작성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5월	아동보고서 집필진 중간 공유회 (5월 12일~5월 13일 / 1박 2일)
6월	편집팀 워크숍 (6월 13일)
7월	아동보고서 집필진 2차 워크숍 (7월 24일~7월 27일 / 3박 4일)
8-10월	아동보고서 편집 및 제출, 발간
11월	아동보고서 발간회 개최

2) 조사방법

①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활동보고서 검토

②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

- 집필진이 온·오프라인용 설문지와 문항을 직접 제작, 배포
- 온라인: SurveyMonkey 웹사이트를 사용해 설문지의 링크 배포
- 오프라인: 종이로 인쇄된 설문지를 집필진들이 각각 주변(학교, 학원, 집 등)에 배포
-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는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1,472부의 응답 활용 (오프라인 1,359부, 온라인 113부).

③ 인터뷰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 있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필진이 추가적으로 인터뷰 진행

④ 그 외 자료

- 각종 논문, 신문기사, 정부 및 전문 기관에서 제공한 통계 자료 등을 활용



II.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1. 건강·휴식·여가]



1. 건강·휴식·여가

1) 문제 제기

대한민국 아동들은 명문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하게 하는 사회적 풍토와 교육제도로 인해 교사나 부모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과 중 큰 부분을 공부에 쏟아야만 한다. 또한 아동들은 과하게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면서 적절한 휴식과 여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첫째, 학습시간이 매우 길다. 대한민국 아동들의 학습시간은 주당 40~60시간으로 OECD 23개국 평균(33시간)보다 최소 7시간, 최대 약 2배 많은 시간을 공부에 쏟고 있다(이창수, 안승진, 2018.03.07). 또한 우리나라 학생의 연간 학습시간은 중학생 2,097시간, 고등학생 2,757시간으로 성인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인 2,069시간보다도 더 길다(성서호, 2018.05.28). 과도한 사교육과 일부 학교에서 아직도 강요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과 영유아의 학습시간마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너무 많은 학습시간으로 인해 수면 및 신체활동 시간이 부족해지고, 아동의 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휴식과 여가를 위한 환경이 부족하다. '학생의 본분은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인식과^[3], '높은 성적을 위해서는 놀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놀이에 제한을 받기도 하고^[4],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시설과 인프라, 놀이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겪고 있다(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 그 때문에 아동들은 스스로 놀이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간혹 시간이 생기더라도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적인 활동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표 1]에 따르면 2013년 대한민국 아동들의 학업스트레스 지수는 50.5%이다. 지나친 학업스트레스는 심각한 경우 아동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3)에 따르면, 9~17세 아동의 3.6%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성별, 학교급, 거주지,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과는 관계없이 높은 비율의 아동이 '학교 성적'이 그 원인이라고 답하고 있다.

2) 국가보고서 내용과 현실

국가보고서 159문단에 따르면 2014년 청소년의 주당 평균 여가생활 시간은 4시간 33분으로 2004년보다 12분 감소했다고 하였다.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중 '자유시간' 모듈의 보고서에 따르면 450명 중 235명의 아동이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123명 '여가시간 부족', 112명 '여가시간 매우 부족')(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5). 더 자세히 살펴보면 68.9%의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아동은 초등학교(43.9%), 중학교(68.8%), 고등학교(80.9%) 순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5].

[3] 설문조사 5번 문항 참고

[4] 설문조사 7번 문항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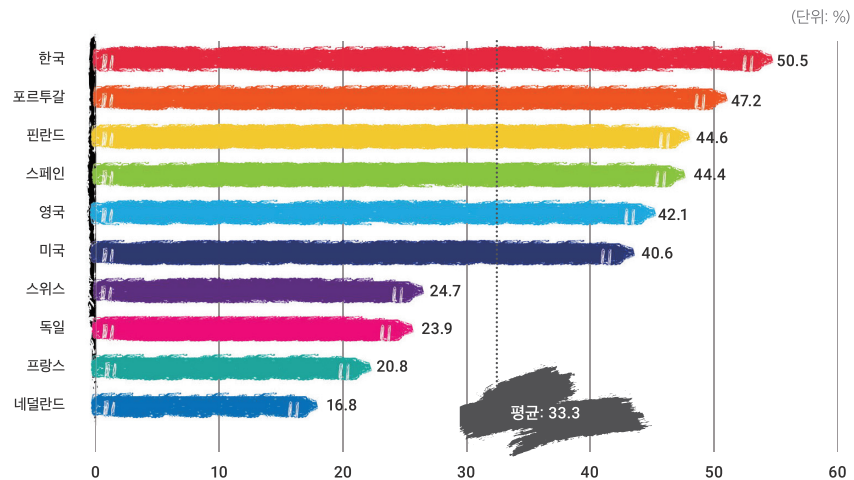
[5] 설문조사 6번 문항 참고

Ⅱ.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1. 건강 · 휴식 · 여가]



학업스트레스



[표 1] 세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지수(박영석, 2015.03.11)

정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해결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아동 참여형 놀이터 등 여가 시설 확대 운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해결책은 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과는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다. 설문조사(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에서는 놀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50.8%의 학생이 ‘과도한 학구열’, 34.6%의 학생이 ‘놀면 안 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답했다. 충분하지 않은 놀이문화 교육이나 놀이(환경) 시설은 각각 3.0%, 4.4%로 낮은 편이었다^[6].

“

“시험기간에 공부도 해야 하고 수행평가도 하면서 성적 관리도 해야 하고
학원도 다니다 보니 그럴 시간(여가시간)은 많지 않다.”

“주위 모든 사람들은 일 혹은 공부를 하는데 자기만 놀면 뒤처지니까”

“부모님들께서 성적에 집착하시고, 예-체능하는 사람들은 연습하기도 바쁜데 성적이 보통이 아
니라 우수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에 놀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

설문조사 7번 문항 중 주관식 응답

[6] 설문조사 7번 문항 참고

II.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1. 건강 · 휴식 · 여가]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한국 어른들의 고정관념’(50.9%)을 지목했으며, ‘새로운 교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높아졌다(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7].

국가보고서 40문단에 따르면 정부는 법률 제정,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 추진, 사이버 상담센터 실시, Wee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 아동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의 자살 예방사업 예산을 살펴보았을 때,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살율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해 자살예방에 대한 예산 투자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역시 부족하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문제 제기

대한민국 아동은 성적으로 인한 참여권의 제한, 사생활 침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학생인권조례^[8],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으로 인해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특히, 성적을 우선시하는 어른들로 인해 아동은 평등한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동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며, 성적에 따라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동은 정부가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성적으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들면,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회 및 선도부 등 학생 임원을 선출할 때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학생에게는 참여 희망 여부를 묻지 않는다. 심지어 학생 회의를 진행할 때 성적을 기준으로 발언 시간을 제공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의견만을 반영하기도 한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는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특정한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7] 설문조사 9번 문항 참고

[8]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4개의 지역교육청(서울, 경기, 광주, 경기, 전북)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한 조례(pmg 지식엔지니어스, 2017.11.01)

Ⅱ.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 국가보고서 내용과 현실

①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

국가보고서 52문단에 따르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학생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반영하려고 하는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등 해당 제도의 현황과 결과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4개의 지역교육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고, 해당 지역의 교육기관이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 또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과 참여하는 학생들의 선발기준도 불분명하다.

국가보고서 63문단에 따르면 학교는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정치 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실시한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는 학생 개인의 개성^[9]을 발현할 권리나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을 둔 학교가 92.6%나 되며, 집회의 자유 제한 조항을 둔 학교도 83.1%로 집계됐다(박준호, 2018.02.19).

학교에서 아동의 표현은 주로 학생회나 학급회의, 학교 대의원회의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기회이지만, 이러한 기회조차도 성적에 따라 다르게 주어진다. 여전히 7%의 학생은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인해 차별받았다고 답변했다(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10]. 활동의 참여 자격 조건 자체가 성적인 경우도 있었고, 그런 규정은 없으나 성적 우수자의 의견에 교사들이 쉽게 동조하거나 더 많은 관심을 두는 등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아동이 위축되어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

“중학교 때 추천으로 회장이 되었으나 성적이 낮다고 탈락시켰다.”

“반장선거를 할 때 선생님께서 선거 후보들의 성적을 물어보셨다.”

“대부분 학생회가 되려면 자격 조건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어야 한다고 적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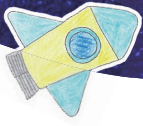
설문조사 11번 문항 中 주관식 응답

[9] 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4개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권리로, 지역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용모를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0] 설문조사 11번 문항 참고

Ⅱ.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②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

국가보고서 64문단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학생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일기장 등 사적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고, 개인의 성적이나 징계 사실 등과 관련된 학생 정보 또한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김영지 외, 2015)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중 21.6%는 여전히 학교에서 시험성적을 공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원하지 않아도 성적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성적이 낮을수록 성적 공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내가 특정 과목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이름과 성적이 공개되면 솔직히 수치심을 느낀다. 특별반 편성에도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특별반에 들어갔을 때 다른 친구들이 비웃거나 눈치를 주는 것도 신경이 쓰인다. 또 반 친구들끼리 일종의 서열이 정해진 것처럼 이번에 누가 몇 등이라더라, 누구는 못 들었더라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J여고 000(김은지, 2015.10.12)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4개의 지역교육청에서 각각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성적 공개 여부와 그 방법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는 학생인권조례 선포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 13조에 학생은 성적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에서조차 ‘성적은 본인에게만 공개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고교생 25.7%, 중학생 17%, 초등학교 14.7%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되어 아동이 성적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주, 2017.01.30).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북 역시 응답자 290명의 38.4%가 성적 공개 등으로 인해 모욕감을 받았다고 응답해 실질적인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권혁일, 2014.10.29).

③ 아동의 의견 존중

국가보고서 52문단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11]에서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 정식 위원은 될 수 없으면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국가보고서는 ‘일부 지역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학생 참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오직 4개 지역에서 적용되고, 강제성이 없으므로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다.

[11]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의 예·결산과 선택교과·특별활동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급식 등 학교의 여러 운영사항을 자문하는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교의 심의·자문기구다. 원칙적으로 학생이 위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Ⅱ.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이러한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아동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아동 스스로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집필진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 반영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에 응답한 78명 중 18명은 ‘성인의 의견이 아동보다 더 낫다’는 답변을 했다^[12]. 이는 ‘아동은 아직 미숙하다’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부 아동은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어른들이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아동의 의사반영을 늘리면 많은 아이는 학업을 줄이자고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동은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

“아동 의사 반영은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이 되진 못한다.”

설문조사 13번 문항 中 주관식 응답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 반영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동이 90.3%로 월등히 많았다. 아동들은 현재 교육정책에 아동의 의사 반영률이 너무 낮으며, 아동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 적극적인 의사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

“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이 아닌 바로 우리 아동들이다.
아동들도 웬만큼 나이가 찬 학생들은 다 생각이 있고, 이런 정책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
인형처럼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의 생각들 또한 좋지만, 아동과 어른들의 생각이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꼭 교육청의 꼭두각시같이 생활하는 것만 같다.”

설문조사 13번 문항 中 주관식 응답

[12] 설문조사 13번 문항 참고

II.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④ 기타사항

i)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태도 및 능력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평가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창구이다. 아동 의견이 왜곡 없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필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에 따르면 일부 학생(5.9%)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13].

아동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 교사로부터 눈치 주기, 화풀이, 협박, 차별 등 부당한 대우와 응답에 대한 공개적 불만 표출 등 다양한 종류의 피해를 보았다고 보고하였다. 작성된 응답을 감시하거나 억지로 확인하는 경우, 작성자를 따로 불러내는 경우 혹은 성적 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14]. 이는 공교육의 발전 및 개선의 길을 막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

“선생님들이 은근히 눈치를 주거나
평가 점수를 낮게 주니까 너희들 점수도 낮게 주겠다고 협박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한 아이를 지적해 그 아이가 쓴 내용을 읊으면서
여러 아이들 앞에서 욕보이게 했다.”

설문조사 15번 문항 中 주관식 응답

ii)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김영지 외, 2015)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인식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의 상당수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르거나(39.5%), 이름만 들어보고 자세히는 모른다(44.0%)고 답을 했다. 또한, 집필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3%의 아동이 학생인권조례의 성적 비공개 조항을 모르고 있었다^[15].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그에 비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시행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13] 설문조사 14번 문항 참고

[14] 설문조사 15번 문항 참고

[15] 설문조사 16번 문항 참고

Ⅱ.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3. 공교육]



3. 공교육

1) 문제 제기

공교육은 아동의 삶의 질과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친다. 국가보고서 142문단에 따르면 2016년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취학률은 90%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자질보다는 성적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압박을 받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체능 및 다양한 통합교과보다는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과목(국어, 수학, 과학, 영어, 사회 등)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예체능 과목의 수업을 실시하지 않고 ‘자습’ 또는 ‘보충수업’으로 대체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다. 학생들 또한 주요 과목에만 매달리면서 자신이 가진 다른 재능을 계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주요 과목 성적이 낮은 학생의 가치는 경시되며,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대우하는 성적 차별 문화가 일상화된다. 또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성적만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심해져서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느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둘째, 현재 공교육은 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지나친 사교육을 유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는 선행과 심화학습이 필요한 경시대회 문제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서 제시하는 등 기존 수업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며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생명·생존과 발달의 권리)와 제31조(놀이 권리) 등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 사교육으로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며, 교사는 모든 학생이 선행 학습을 했다는 전제하에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므로 공교육의 질이 더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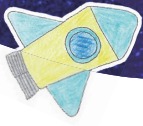
셋째,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안에서 학습의 기회, 학습시설 이용 기회가 성적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고 있다. ‘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교육 기회의 차등’ 혹은 ‘학생에게 오기를 주는 좋은 자극’이라고 잘못 인식되기도 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능력 차이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차별이라 할 수 있다(김지혜, 2016). 결국 성적이 낮은 학생은 질 낮은 교육 기회를 받으면서 무시당하고 차별 당한다고 느껴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이는 학생들의 정신적·교육적 발달을 저해한다.

넷째, 대한민국에서는 아동의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진로체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16]라는 대안이 마련되었으나 학생들의 실질적인 만족도는 낮고,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아동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16] 2016년,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었다. 자유학년제란 자유학기제를 기존 한 학기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2018년부터 전국의 약 1,500개교에서 자유학년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Ⅱ.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3. 공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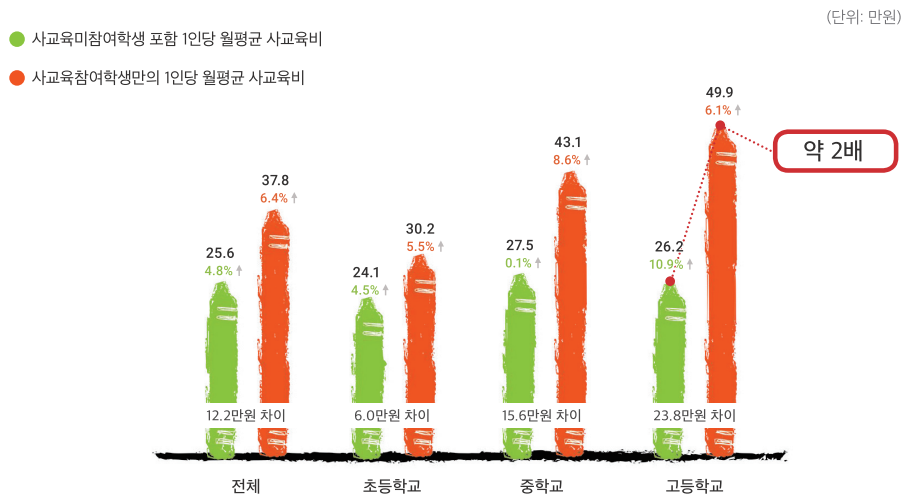


2) 국가보고서 내용과 현실

① 사교육

국가보고서 147문단에 따르면 2016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 6천원으로 2011년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67.8%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래 그래프를 보면, 국가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계산할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 8천원으로 증가하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약 5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즉, 이는 국가보고서의 분석과는 다르게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교육 참여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차이



[표 2] 사교육 참여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차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 0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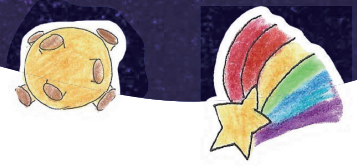
국가보고서 148문단에 따르면 정부는 선행학습의 관행을 근절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17]을 제정하고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학생 660명 중 261명은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 별개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18].

[17]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 설문조사 23번 문항 참고

Ⅱ.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3. 공교육]



“

“학교는 학생들이 이미 선행학습을 했다는 전제하에 가르치므로 수업 내용이 매우 가볍지만,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학교 시험이나 수업의 난이도가 사교육 없이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따라가기 힘들다고 느껴진다. 영단어 같은 것도 학원 안 다니면 본 적도 없는 단어를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알고 있어서 선생님도 다들 아는 줄 알고..... 많이 아쉽다.”

설문조사 23번 문항 中 주관식 응답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었으나, 과연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과열된 사교육을 정부가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 증가와 수면 부족 등 아동의 권리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을 받다보니 어찌 보면 사교육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스트레스 증가와 수면 부족 등의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스스로 문제에 대하여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사교육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설문조사 23번 문항 中 주관식 응답

국가보고서 152문단에 따르면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보인 EBS(교육방송) 강의를 활성화하고 EBS 강의의 질적인 보안을 위해 교과심화·보충형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한다. EBS는 대한민국 내 모든 아동이 가장 쉽게 공통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접할 수 있는 교육 수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표 3]을 보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BS 수능강의 및 사이버학습을 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또한, 집필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에 따르면 ‘EBS로 충분히 학교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가 52.2%를 차지하였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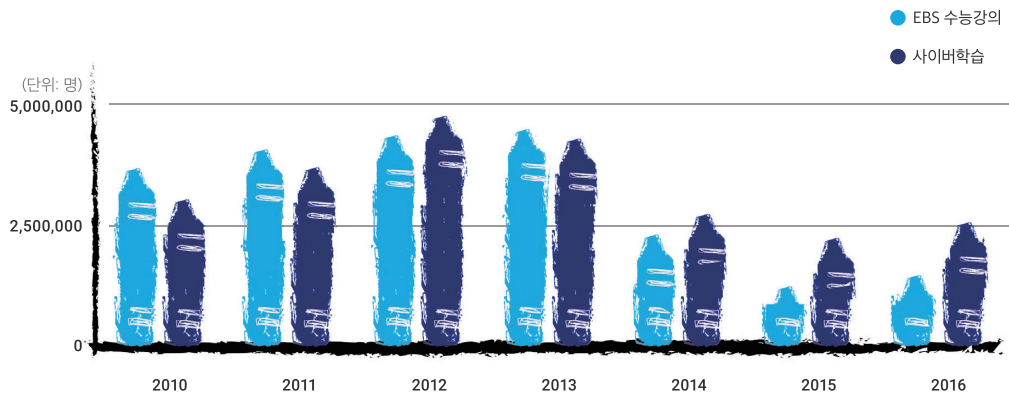
[19] 설문조사 24번 문항 참고

Ⅱ.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3. 공교육]



e-러닝활용도 현황 - 회원수



[표 3] e-러닝(EBS수능강의, 사이버학습) 활용현황 (교육부, 2017.08.11.)

② 교육과정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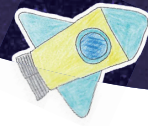
국가보고서 154문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초·중고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으로 구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집필진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 공교육이 성적과 소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토론식, 발표식, 학생 참여 위주의 수업보다 암기식 수업이 많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20.4%). 뿐만 아니라 '교과 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고난도 문제,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라는 답변도 다수를 차지했다^[20]. 이는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와닿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주입식, 암기식, 성적 위주 교육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교육은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관심사를 반영하고, 교육과정은 연령에 맞는 발달과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입시과목이 아닌 예체능 수업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배제되고 있다. 주당 150분인 고등학교 체육수업 권장시간을 채우는 학교는 25.8%에 불과하다(김잔디, 2018.02.02). 이는 고등학교가 체육수업에 주당 3시간조차 할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체육을 포함한 예체능 과목을 자습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시험기간에는 이런 일이 더욱 자주 발생한다.

[20] 설문조사 19번 문항 참고

Ⅱ.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3. 공교육]



③ 학습기회의 차별

국가보고서 142문단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취학률이 증가하였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취학률을 기준으로 교육 기회 보장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공교육 내에서 성적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다르게 제공되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활동 기간(2015년~2017년)동안 각 모듬이 수집한 '성적을 기준으로 한 교육의 기회 차별' 사례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5;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7).

i) 학습기회의 차별^[21]

- ✓ 주요 과목 특강 시청 기회를 전교 40등 이내 성적우수자에게만 제공
- ✓ 국어, 영어, 수학 야간심화수업을 성적우수자에게만 제공
- ✓ 월 3회 외부강사 논술 면접 지도를 성적우수자에게만 제공
- ✓ 인터넷강의 수강 지원금 10만원을 성적우수자에게만 제공
- ✓ 러시아 해외연수 기회를 성적우수자에게만 부여
- ✓ 시험에 대한 정보를 성적우수자에 한하여 편파적으로 제공

ii) 학습시설 이용 기회의 차별

- ✓ 성적우수자에게만 더 나은 시설의 자율학습실(카펫, 정수기, 개인 칸막이, 냉·난방시설 등) 제공^[22]
- ✓ 야간자율학습실 자리가 부족할 경우 성적순으로 제한^[23]
- ✓ 성적순으로 교실 자리 배치^[24]
- ✓ 중·고등학교 배정 시 거리가 먼 학생 순서가 아닌 성적순으로 배정^[25]
- ✓ 기숙사 입실 기회를 성적우수자에게만 제공^[26]

iii) 기타 활동 참여 기회에 대한 차별

- ✓ 배식 순서에 있어서 성적우수자에게 우선권 부여^[27]
- ✓ 성적으로 대회 참가자 제한^[28]
- ✓ 청와대, 국회, 서울대 등 각종 시설 탐방 기회를 성적우수자에게만 부여^[29]
- ✓ 학급회장과 부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에 성적 조건에 대한 조항 존재^[30]

[21] 2017 '동물의 왕국' 모듬 수집자료

[22] 2015 '수아조' 모듬 수집자료, 2017 '동물의 왕국' 모듬 수집자료

[23] 2015 '지수재단' 모듬 수집자료

[24] 2015 '지수재단' 모듬 수집자료

[25] 2015 '지수재단' 모듬 수집자료

[26] 2017 '동물의 왕국' 모듬 수집자료

[27] 2015 '수아조' 모듬 수집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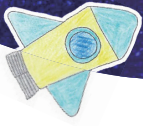
[28] 2015 '수아조' 모듬 수집자료, 2015 '지수재단' 모듬 수집자료

[29] 2017 '동물의 왕국' 모듬 수집자료

[30] 2015 '지수재단' 모듬 수집자료

Ⅱ.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3. 공교육]



그동안 이러한 사례 중 일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술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런 차별적 관행이 많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이 지켜야 할 가치인 '균등성'에 어긋나고 학생들 사이의 능력 차이를 더욱 심화시킨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고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다. '학업성적' 자체의 효과와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의 효과를 비교할 때, 학생들이 학업성적 자체로 불행하고 우울한 것보다 그로 인해 차별받는 경험 때문에 더 불행해지고 우울해진다고 한다(김지혜, 2016).

④ 진로체험교육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특기를 살리는 등 진로나 적성과 관련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전체의 34.3%에 해당한다(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 2015). '현행 교육 시스템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를 떠나도록 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실제적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고서 155문단에 따르면 '전국의 중학교는 2016년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이 느끼는 자유학기제의 실상은 조금 다르다.

i) 자유학기제가 과연 시험 부담 해소에 효과적일지에 대해 집필진이 설문조사(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를 실시하였는데 '그렇지 않다'(2점)와 '그렇다'(3점) 사이의 평균 2.61점의 결과가 나와, 확실하게 시험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31].

“

“2014년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학교였는데, 시험을 보지 않다 보니 수행평가가 가중되어 시험보다 스트레스가 심했다.”

설문조사 33번 문항 중 주관식 응답

ii)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대부분이 형식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 또한,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의 단편적인 활동으로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의 진로가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반영할 수 없다.

“

“다양한 직업을 직접 참여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자유학기제는 대부분이 강연 듣기이고, 주제선택활동 또한 너무 미미하다.”

“우리 학교에서 하는 진로탐색활동의 경우 중간에 진로가 바뀌어도 바꾸기 쉽지 않고, 정보도 얻기 힘들다.”

설문조사 33번 문항 중 주관식 응답

[31] 설문조사 34번 문항 참고

Ⅱ.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3. 공교육]



iii) 집필진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 자유학기제의 활동 선택 시 남녀가 신청할 수 있는 활동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수용 인원이 적거나 선택지가 한정되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위바위보나 성인이 정해주는 대로 결정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32]. 이는 아동들이 실제로 원하는 진로활동 참가의 기회를 제한하고, 자유학기제의 본 취지 달성을 어렵게 한다.

iv) 도시와 농·어촌 간의 진로체험교육의 격차가 심하다. 유은혜 국회의원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조사 대상 중학교 대부분(29곳 가운데 24곳)의 진로체험처가 16곳 이상으로 다양했고, 경기 지역도 20곳 중 11곳의 중학교가 16곳 이상의 진로체험처를 둘러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체험처가 5곳이 채 안 되는 중학교가 많았다. 자유학기제의 핵심인 진로체험활동의 기회와 다양성에서 도시·농촌 간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수범, 2015.10.02).

전반적으로 자유학기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이 자유학기제의 당사자인만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고서 153문단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을 개발·운영하고 있고, 2013년에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 2015년에는 ‘진로교육법’^[33]을 제정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진로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를뿐더러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알기가 힘들다. 이름뿐인 법안인지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필요하다. 집필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에 따르면 진로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88.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에서도 다양한 진로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고등학생들의 평균점수가 3.21점으로 가장 높았다^[34]. 진로교육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은 교육의 종류 다양화(42.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진로교육의 질적 보완(27.6%), 진로교육의 횟수 증가(26.8%)가 그 뒤를 이었다^[35]. 이에 현장체험, 진로상담 외에도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진로교육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32] 설문조사 33번 문항 참고

[33]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34] 설문조사 35번 문항 참고

[35] 설문조사 36번 문항 참고

Ⅱ.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4. 교육격차]



4. 교육격차

1) 문제 제기

교육격차는 아동의 교육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아동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교육격차는 초·중·고등교육 전반에서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국가보고서 143문단과 144문단에서 정부는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취약계층 학생을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입시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지역, 문화, 소득, 장애, 학업성적, 학업중단 여부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현실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교육격차의 현실과 더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아동 집단별로 자세히 다루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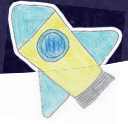
2) 국가보고서 내용과 현실

① 농어촌 지역 아동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도시에 비해 학교 당 평균 학급 수 등의 교육 자원을 적게 누리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대개 군/읍/면 및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중소 도시의 경우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대도시보다 많은 모습을 보여 한 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 예산 중 취약계층의 아동을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다.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교육복지 지원비를 통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배정하지만, 교육청이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여 시·도별로 교육을 위해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교육부, 2016). 또한, 시·도 예산을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비율도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

Ⅱ.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4. 교육격차]



② 다문화 아동

대한민국의 다문화 아동은 총 109,387명으로, 최근 5년간 해마다 약 1만 명씩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아동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다문화 아동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8). 국가보고서 167문단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한 시설을 통해 다문화 아동의 공교육 진입 및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기적응지원센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문화 아동 지원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조기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들의 경우 전체 131곳의 시설 중 57곳이 서울과 경기도에 있고, 외국인학교 역시 총 42곳 중 26곳이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다문화 아동을 지원하는 시설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데다가, 그 인지도와 이용률도 매우 낮은 편이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시설의 수가 적다. 다문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의 이용률 또한 매우 낮다. 전체 다문화 아동 중 9.6%만이 다문화 예비학교를 이용하고 있으며, 7.9%만이 레인보우스쿨^[36]을, 7.2%만이 다문화 대안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원 시설과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다문화 아동의 비율도 50% 미만이다(통계청, 2016.08.17). 이것은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아동 지원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며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미등록 이주아동

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대부분이 공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고서 167문단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면제되어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된다고 한다. 물론 제도상으로는 미등록 이주아동도 입국기록이나 주거기록이 있으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37]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학적관리 매뉴얼'에는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에도 미등록 이주아동이 진학할 수 있다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학교장 재량으로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로의 입학을 권유할 수 있기 때문에^[38] 학교장이 미등록 이주아동의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아동들은 특별학급이 있는 학교만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많지 않아 이 경우 아동은 장거리 통학을 해야만 한다(유선희, 2018.05.06)^[39]. 심지어 입학을 한 미등록 이주아동 역시 신분을 증명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이 어려워 행정 절차에서 누락되고, 장학금 지급, 급식비 지원, 체험학습 보험 가입 등 교육과정 전반의 서비스에서 소외된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들이 강제 추방 당해 교육이 단절될 위험도 크다.

[36] 중도입국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 포함)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 및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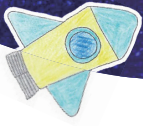
[3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대통령령 제28686호(2018)

[3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4항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39]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 모든 아동들은 시청에 입학신청서만 제출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공립학교에 자동으로 배정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교육 관련 법령을 통해 국가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모든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Ⅱ.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4. 교육격차]



④ 장애아동

국가보고서 116, 117문단에 따르면 정부는 특수학교와 특수교사를 비롯한 장애아동 전문 교육 자원의 양을 늘리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애아동과 특수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교가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특수학교를 세울 수 있는 땅이 있더라도 학교를 세우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가 15년간 특수학교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많은 지역이 오랫동안 특수학교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건립되어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시설이 더욱 부족하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또한, 국가보고서 118문단에서는 정부가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참여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와 더불어 장애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일반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장애아동이 입학할 거부당하거나 편견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장애아동의 입학할 거부하거나 입학할 포기하기를 원하는 일부 사립 학교들의 사례도 있고(이영민, 2018.05.03), 인지능력에 차이가 없어도 장애아동이면 무조건 수준별 수업에서 성적이 낮은 반에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장하나, 2017.10.29). 또한,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아동에게 과도한 수준의 과제를 시키거나 수행평가에서 배제해버리는 경우도 있다(성서호, 2018.07.23).

한편 지체장애가 있는 아동은 학교를 선택할 때 엘리베이터, 경사로의 유무에 따라서 제약을 받으며, 그런 편의시설이 있더라도 보조교사가 따로 없으면 학교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또한, 통학 거리가 먼 학교에는 입학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택시 배차 대기시간만 2~3시간씩 걸리는 일이 잦다(박상현, 김승구, 2018.08.01).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과정은 비장애아동과 다를 게 없지만 택시 배차 시간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야만 한다. 늘 지각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먼 거리에 위치 한 학교의 진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청각장애아동을 위해 보청기 등 청력보조기구가 지급되고 있지만 기구를 통해서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세포가 대부분 소실된 청각장애인에게 보조기구의 지급은 무의미하다.

⑤ 학교 밖 청소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학업중단 학생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14년 약 52,000명의 아동이 학업을 중단하고(교육부, 2015.09.09) 진로개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수준에서 그칠 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지원은 충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은 일반적으로 학교를 통해 제공되므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경우 진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4명 중 1명 이상이 학교를 그만둔 뒤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가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구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최인재 외, 2015).

국가보고서 145문단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진로지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적절한 도움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받는 진로지원 서비스는 불충분한 상황이다(노지혜, 2018). 청소년들이 꿈드림센터에 요청한 서비스와 실제 꿈드림센터

Ⅱ.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4. 교육격차]
[5. 입시제도]



터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검정고시 관련 서비스, 상담 정보(심리 상담이나 진로 상담 등), 진학 정보의 제공, 진로계획상담,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자격증 정보에 대한 수요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윤철경, 김성기, 김현미, 2016).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나 진학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알더라도 선뜻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또한, 국가보고서 146문단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집필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에 따르면 대안교실과 대안학교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은 17.8%에 불과하다^[40]. 대안교실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효과도 낮을 수 있다. 이에 아동들이 자신이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교육시설과 다양한 진로를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5. 입시제도

1) 문제 제기

대한민국의 대학입시 유형은 크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뉜다. 수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외 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 등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신입생을 조기 선발한다. 수시는 입학사정관제도를 포함한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등으로 구분된다. 정시모집은 수시모집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심으로 선발한다.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왔으나 여전히 성적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개인의 소질 등은 간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입시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느낀 아동들은 61.6%이며, 그 이유로 '성적 위주(65.8%)'로 이루어지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25.4%)'는 점을 선택했다(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41].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데, 대학입시제도가 도리어 아동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틀이 된 것이다.

'공부를 못 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아동은 30.5%로 '학업성적'은 한국 아동·청소년들 사이에서 차별의 주요 사유로 꼽힌다(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은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차별과는 달리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드러내는데(김지혜, 2016), 그 중심에 아동들이 삶의 목표로 삼아야만 하는 '성적 위주' 입시 제도가 있다.

아동은 억지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진정성 없는 스펙을 쌓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포기하며, 좋은 대학을 입학해야 한다는 큰 부담을 겪는 등 입시제도의 문제 속에서 살고 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발달권(제29조 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이므로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입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40] 설문조사 38번 문항 참고

[41] 설문조사 39, 40번 문항 참고

II.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5. 입시제도]



2) 국가보고서 내용과 현실

국가보고서 144문단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취약계층 아동을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에 한해 선발하게 하는 ‘사회통합 전형’을 마이스터고^[42],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등으로 확대하고, 대입 전형 시 장애인, 농어촌학생,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등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고른기회전형’ 확대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농어촌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명문대 진학 창구로 악용돼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무색해진다. 또한 고소득층 자녀가 농촌으로 주소지를 옮겨 특별전형 자격을 얻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농어촌 해당지역 아파트는 농어촌 특별입학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어 집값이 올라가기도 한다. 따라서 진짜 열악한 환경의 농어촌 자녀는 어쩔 수 없이 특별전형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읍/면/리 지역만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지정기준이 부적절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지역의 농어촌 학생들은 행정구역상 ‘동’에 산다는 이유로 자격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강영운, 2016.06.03).

또 다른 문제로, 불법적으로 장애인증명서를 위조해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의 자격으로 대학에 부정 입학하여 적발되는 등 취약 계층을 배려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백영미, 2018.01.25)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국가보고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국가보고서 150문단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대학 진학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위주 대입전형체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시험 성적 이외에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 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사교육보다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의도이다.

하지만 위 제도들이 아동의 부담을 줄이고,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입학사정관제도에 유리한 수상 기회를 성적이 우수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교사들이 그런 아동에게만 대학 진학 추천서를 써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제도의 의도와는 반대로 성적지상주의는 지속되고 있다. 집필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입시제도가 아동의 인성, 능력, 소질, 발전 가능성을 고려, 존중하냐는 질문에 ‘아니오’가 64.7%로 많은 아동들이 대한민국의 입시제도가 아동의 인성과 능력 등을 고려 및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다^[43].

현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아동들의 만족도 응답의 전체 평균은 ‘그렇지 않다(2점)’와 ‘그렇다(3점)’ 사이인 2.65점으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만족 정도는 중간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44].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보인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

[42]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해당분야의 기술장인을 육성하려는 고등학교이다.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전자, 기계, 로봇, 통신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마이스터고가 있다. 독일의 마이스터 관련 제도를 모티브로 2010년 3월 2일부터 운영 중에 있다(중소기업청, 2010.11).

[43] 설문조사 41번 문항 참고

[44] 설문조사 42번 문항 참고

Ⅱ.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5. 입시제도]



“

“학생의 인성이나 소질 등을 판단하는 것도 결국은 서류와 답이 준비된 면접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정말 드러낸다고보다는 입시에 통과하기 위한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하므로 그저 기준에 자신을 맞춰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다른 애매모호한 기준, 사교육 조장과 거금을 들인 학생부 작성, 비리에 취약한 구조와 학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대학”

“성적이야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만 그 외적인 부분(자소서, 면접 등)은 정보력, 학교이름, 학원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설문조사 43번 문항 중 주관식 응답

아동 집필진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아동보고서 집필진, 2018)를 살펴보면, 성적 위주의 입시제도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과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아동이 많았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수는 전체 응답자 중 47.7%에 달했고^[45], 차별을 경험한 아동은 초등학교(5.4%), 중학교(19.4%), 고등학교(31.5%) 순으로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록 증가한다^[46]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가보고서는 대학 입학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 아동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대안학교의 아동 역시 검정고시로만 대학에 갈 수 있다. 집필진이 인터뷰 한 제주시 대안학교에 다니는 14세 김예지 양은 정부에서 대안학교를 공식 인정해주지 않아 검정고시를 봐야 상급학교 진학을 할 수 있다는 불편함을 이야기하였다.

“

“대안학교를 정부에서 공식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검정고시라는 시험을 봐야 학력 인정이 된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는 것과 취업에 있어서 불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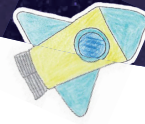
집필진 인터뷰 중

이런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제도권 교육 밖에 있는 아동들은 대입 정보 및 진학지도를 받기도 어렵다.

[45] 설문조사 44번 문항 참고

[46] 설문조사 45번 문항 참고

Ⅲ.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1 건강·휴식·여가

<우리가 바라는 세상>

- ①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
- ② 밤 늦게까지 공부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세상

<권고사항>

- ① 현재 침해되고 있는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및 쉴 권리 보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른들에게 아동의 놀 권리 교육을 실시해주세요.
- ② 아동의 여가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법제도를 제정 및 마련해주세요.
- ③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여가시설을 만들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주세요.
- ④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서적인 안정 또한 중요함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올바른 정서 함양과 정서 안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을 제작하고 실행해주세요.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우리가 바라는 세상>

- ① 아동에게도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고 장려되는 세상
- ② 성적에 상관 없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세상
- ③ 성적을 포함한 아동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보호되는 세상

<권고사항>

- 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 지자체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권장해주세요.
 - 학생인권조례 조항에 학교와 교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세요.
 -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이행 여부를 검토해주세요(교내에서 이뤄지는 아동의 참여과정을 공개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 아동의 사적기록물(성적 포함)을 동의 없이 공개하지 말 것 등).
 - 아동과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조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향상시켜주세요.
- ② 학교 내에서의 학생 참여를 보장해주세요.
 - 학교 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를 보장해주세요.
 - 학생을 학교운영위원으로 위촉해주세요.
- ③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자의 익명성을 확실히 보장해주세요.

Ⅲ.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3 공교육

<우리가 바라는 세상>

- ①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지나친 사교육이 사라진 세상
- ② 암기식, 주입식 교육보다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관심사를 반영하는 세상
- ③ 학업성적을 이유로 교육기회의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
- ④ 공교육에서의 진로체험교육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상
- ⑤ 아동들이 입시과목^[47]이 아닌 다양한 교과를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는 세상

<권고사항>

- 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항^[48]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부분이 특히 잘 이행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주세요.
- ②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내세우는 EBS와 방과후학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완해주세요.
- ③ 잘 이행 되고 있지 않은 특정 과목의 수업 시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해주세요.
- ④ 『교육기본법』 제4조^[49]에 명시된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주세요.
- ⑤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하고 질 높은 진로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진로교육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아동의견을 반영해주세요.
 - 자유학기제 운영의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 단편적인 자유학기제를 진로교육과정 전반으로 확대해 지속적인 진로교육을 해주세요.

[47] 한국에서의 입시과목은 대체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탐구, 사회 탐구, 한국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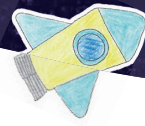
[48]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②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9]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4 교육격차

<우리가 바라는 세상>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지역 및 문화적 배경, 부모의 출신, 장애 여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권고사항>

- ① 낙후된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배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금을 증진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해 주세요.
- ② 부모의 출신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교육시설을 골고루 증설하고, 이에 대해 홍보해주세요.
- ③ 미등록 이주아동이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입학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개정을 통해 그들의 의무교육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 ④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여 전국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동시에 일반학교에서도 장애아동의 복지를 보장해주세요.
- 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국 대안학교를 증설하고 홍보를 증진하며 학업중단 학생들의 진로개발과 추후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학교 밖 아동의 교육 기회를 보장해주세요.

5 입시제도

<우리가 바라는 세상>

- ① 성적 위주가 아닌 아동 개개인의 소질과 개성 등을 고려한 입시제도가 마련된 세상
- ② 아동이 입시제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위한 입시제도가 마련되는 세상
- ③ 입시제도로 인해 고통 받거나 성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권고사항>

- ① 교육의 주체인 아동이 직접 입시정책의 수립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 ② 모든 아동(무소속 아동, 대안학교 학생, 장애아동, 농어촌지역아동 등)의 인성·능력·소질,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및 법을 제정·개정해주세요.
- ③ 사회통합전형이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전형이 본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주세요.
- ④ 입시제도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아동이 입시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 당한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세요.

Ⅲ.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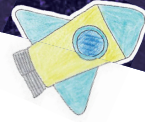


IV. 참고문헌



- 강영운(2016.06.03). “시행20년 농어촌전형의 두 얼굴”.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400526>
- 교육부(2015.09.09). “지난해 학업 중단 학생 8662명 감소”.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00416>
- 교육부(2016). 시·도 교육청별 세출대비 비중 현황.
<http://www.eduinfo.go.kr/portal/theme/eduActPage.do>
- 교육부(2017.08.11). e-러닝(EBS수능강의, 사이버학습) 활용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60
-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5). 2015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결과보고서.
<http://childvoice.kr/archive>
-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7). 2017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결과보고서.
<http://childvoice.kr/archive>
- 권혁일(2014.10.29). “전북지역 학생 10명 중 4명꼴 ‘체벌 경험’”. 전북일보. 설문조사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28698>
-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771.
-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전선영, 김평화(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668.
- 김은지(2015.10.12). “시험성적 공개, 수치심 느껴요!”. 단디뉴스.
<http://www.dandinews.com/news/articlePrint.html?idxno=1070>
- 김잔디(2018.02.02). “고등학교 74% 주당 권장 체육수업시간 150분도 못 채워”.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2/0200000000AKR20180202110400017.HTML>
- 김지혜(2016). 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과 교육의 불평등. 법과사회, 53. 159-184.
- 노지혜(2018).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변인 분석: 진로장벽, 진로활동, 진로성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현, 김승구(2018.08.01). “이 더위에… 2시간째 안 오는 장애인 콜택시”.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1/2018080100216.html
- 박영석(2015.03.11). “<그래픽> 세계 학업 스트레스 지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1000000.html?cid=GYH20150311000300044&from=search>
- 박준호(2018.02.19). “학생인권 소홀 ‘학교규칙’…인권위, 교육부장관에 개정 권고”. 뉴시스.
http://www.news1.com/view/?id=NISX20180219_0000231021&cId=10201&pId=10200
- 백영미(2018.01.25). “‘기부입학부터 장애인증 위조까지’…대입비리 천태만상”.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413415&sid1=001>
- 보건복지부(2013). 2013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7.03.14). 2017-03-13 2016 사교육비 결과분석.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통계센터.
<http://data.noworry.kr/297?category=444374>
- 성서호(2018.05.28). “국내 아동·청소년 24%, 휴식·자유시간 전혀 없이 생활”. 매일경제.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php?t_uid=21&c_uid=2965469&sCode=124
- 성서호(2018.07.23). “자폐아에 한자 쓰기 강요는 괴롭힘”…인권위, 교사 징계 권고”.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3/0200000000AKR20180723048200004.HTML?input=1195m>

IV. 참고문헌



- 아동보고서 집필진(2018). 아동보고서 작성을 위한 ‘교육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 관련 설문조사.
- 유설희(2018.05.06). “[미등록 이주아동 리포트] ③ ‘나홀로’ 방치된 이주아동들 ‘학교 가고 싶어요’”.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62235005#csidx93a2f0094405e11b3c32ed6b38f1345.
- 윤철경, 김성기, 김현미(2016).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 방안. 서울: 여성가족부.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23.
- 이수범(2015.10.02).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도농격차 너무 크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11129.html>.
- 이영민(2018.05.03). “‘언어장애아동, 입학 거부’ 사립초교장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0315090788416>
- 이영주(2017.01.30). “학생인권조례 ‘무색’... 중학생 25% “교사에게 체벌”.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6/0200000000AKR20170126102700061.HTML>
- 이창수, 안승진(2018.03.07). “청소년 氣 살리자] 스트레스 풀 기회 없는 아이들... 한순간에 ‘화’ 폭발”.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07015321>.
- 장하나(2017.10.29). “통합교육 일반학교’ 장애학생 36.7% 학교차별 경험...차별 배우는 교실 되지 않으려면”.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6463.html
- 중소기업청(2010.11). “마이스터고”. 대한민국정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8971&cid=42103&categoryId=4210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86호(2018).
- 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2016.08.17).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 시설 이용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001301007&vw_cd=MT_ZTITLE&list_id=154_11779_30&conn_path=F0&path=
- 통계청(2018). 청소년 통계: 2018년 청소년 통계 / 2018년 청소년 통계 부문별 통계 / 1. 인구 및 가족.
<http://kostat.go.kr/wsearch/search.jsp>
-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유·초·중등 교육통계편. 충청: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장애인개발원(2017). 2017 장애인백서.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pmg 지식엔진연구소(2017.11.01). “학생인권조례”. 박문각.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06723&cid=43667&categoryId=43667>.



MEMO

MEMO

MEMO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정책과제

인 쇄 2019년 7월 23일

발 행 2019년 7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044)415-2114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